

1329

72-7-47

28 3 29

북한및공산권문제에대한홍보대책

과목

(한국언론이 취해야할 기본방향)

연구기관

경향신문사

안보통일연구위원회

국토통일원

제 출 문

국토통일원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북한 및 공산권문제에 대한 홍보대책” 연구
사업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2년 6월 15일

연구기관명	: 경향신분사회
연구책임자	: 안보통일연구위원
연구위원	: 권영백
"	: 김귀계
연구조원	: 최상완
"	: 이형래

머 리 말

8.15 해방 후 지금까지 굳게 닫혀 있던 남북(南北)간에 조그마한 통로(通路)가 지금 뚫려가고 있다. 판문점(板門店)에서 벌어지고 있는 남북적십자사 회담이 바로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체제(冷戰體制)의 부산물로 생긴 우리한반도의 분단(分斷)은 국제정세의 해빙(解氷)무드와 또 우리의 민족적 자주성의 의하여 이렇게 지금 대화(對話)의 통로를 뚫어가고 있다. 남북간의 이 통로는 앞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본회담이 열리게 되는날 더욱 그 폭(幅)이 넓어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를 돌이켜 보면 너무나 급격히 닥친 시대의 변화때문에 지금까지 견지(堅持)해 왔던 몸가짐에 상당한 위화감(違和感)이 깃들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특히 언론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금기(禁忌)의 대상처럼 되어있던 공산주의사체에 대해 우리는 과감한 해부와 비판의 필봉(筆鋒)을 들이대야 한다는 절대적인 명제(命題)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러면 한국의 언론은 어떤 방향에서 북한의 내부를 파고 들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언론인이 풀어진 시급한 현실문제로 등장되어 있다. 경향신문사 안보통일연구위원회가 여기에 내놓는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시론(試論)의 선격을 띤 연구논문이다. 이 논문은 정부의 국토통일원의 요청에 따라 경향신문사 안보통일 연구위원 3명과 보조연구원 2명의 공동연구로 작성한 것이다. 남북간의 대화를 계기로 한국 언론이 북한과 공산권문제를 보도함에 있어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또 어떤 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하는가 하는것이 이 논문의 주제(主題)이다.

주제에 관한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네개의 「파트」로 분야를 나누었다. 제1장은 서론(序論)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안보와 언론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규명해 보았고(최서영 연구위원집필) 제2장은 북한 및 공산권문제에 대한 한국언론의 보도현황을 살펴보았고(이형래 북한부기자집필) 제3장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국토가 분단된 다른나라에서는 보도의 방향이 어떤것인가를 조사해 보았고(권영백 연구위원 및 최상완 북한부기자집필) 제4장에서는 결론과 시정돼야할 문제점을 정리해 보았다(김귀제 연구위원집필)

2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또 자료를 입수하기가 지극히 어려워 이 논문은 여러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음을 사과드린다. 추후보다 더 알찬 노력으로 보완하기로 하고 우선 여기에 이것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많은 비판과 교시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1972년 6월 15일

경향신문사 안보통일연구위원회

목 차

제 1 장	국가안보와 언론의 문제	1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제 2 절	정부와 언론	2
제 3 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관리	5
제 4 절	한국에 있어서의 현실	7
제 5 절	앞으로의 방향	8
제 2 장	북한 및 공산권 문제에 대한 보도현황	21
제 1 절	개황과 문제점	21
제 2 절	헌행법의 언저리	23
제 3 절	남북교류론	27
제 4 절	검열제도	29
제 5 절	남북의 보도의 역이용도 (逆利用度)	33
제 6 절	관계사건의 판례	34
제 3 장	다른나라의 공산권보도태도	41
제 1 절	이스라엘의 경우	41
제 2 절	자유중국의 경우	47
제 3 절	월남의 경우	52
제 4 절	서독의 경우	56
제 4 장	결론 및 정책건의	63
제 1 절	결론	63
제 2 절	정책 (政策) 건의	66

제 1 장 국가안보와 언론의 제 문제

제 1 절 문제의 제기

국적(國籍) 없는 사람이 있을수 없는것처럼 국적있는 언론은 있을수 없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언론은 그가 속한 나라의 국가이익(또는 국가안보)에 최대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특히 우리 한국과 같이 휴전선(休戰線)을 사이에 두고 북한 공산주의집단과 대치(對峙)하고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국가안보(國家安保)에 대한 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우선적인 것으로 등장하게 된다. 나라가 처한 입장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다른 어떤 나라의 언론보다도 더 국가안보에 관해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언론(신문, 라디오, TV 등 일체의 「매스미디어」)은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자연권(自然權)」이라는 인류의 자각에서 출발된 국민의 기본권(基本權)이기는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구조나 기능은 어디까지나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신문, 방송 등 「매스미디어」의 구조나 기능은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제약을 받게된다. 이에 따라 오늘의 세계 각국은 저마다 역사적 조건에 적합한 언론을 발전시켜 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공산주의 집단과 지금 강은(強穩)양면으로 투쟁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서는 언론이 공산권 문제에 대한 보도를 비롯하여 온갖 보도활동에 있어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어떤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것이 시급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이 언론의 자유를 필수적인 기본요건(基本要件)으로 삼고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만큼 국가안보와 언론의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 꽤 복잡한 양상을 드러 낸다.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산권(共產圈)에 관한 보도에 있어서나 또는 국내적인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나 어떻게 하는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데 있어서는 개념의 혼란이 일어나고 가치기준(價值基準)의 차이가 생겨난다. 국가안보와 언론의 제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는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점을 다각도로 검토해 봄으로써 우리가 택할길을 찾으려는데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본질, 국가 및 정부와 언론의 관계, 국가안보의 개념, 국가

안보와 언론의 제약관계등... 이러한 문제들을 원론적(原論的)으로 검토해 본다음 한국적 현실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 봄으로써 우리가 취할 길을 찾아보려는 것이 곧 이 논문의 목적이다.

제 2 절 정부와 언론

오늘날 언론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모체(母體)가 된다. 말할 필요조차 없이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치적이견(異見)을 전제로 하여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이 주권(主權)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참대한 국민의 정치적 의견이 하나의 국론(國論)으로 통일되는 형식이 투표와 선거의 목적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언론의 자유가 무엇보다도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포방하는 나라는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언론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헌법 제 18 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도 민주주의가 더 완벽히 발전한 미국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어떠한 법률로도 원천적 의미의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까지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언론자유가 그 국가질서의 생명선임을 선언한 것이다.

근대 민주주의는 이와 같이 언론자유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될수 있는 대로 독립하려는 경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국가권력은 아무리 좋은 의미에 있어서도 필요악(必要惡)이라는 고전적 사상이 근대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격이 이런 차원에 머무르고 있던 때에 있어서는 국가(또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대립적 관계를 나타냈다.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규탄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다.

그러나 20 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이러한 고전적 개념은 큰 변질을 겪기 시작했다. 「정부로부터의 자유」는 점차 「정부에의 자유」로 그 차원(次元)을 높여가고 있는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자유민주주의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해 가는 이유는 국가사회가 점차 다기화(多岐化)되고 복잡하게 직능화(職能化)되어가기 때문이다. 19세기때처럼 사회가 단순하지 않고, 20세기의 오늘은 산업과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정부의 역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가령 민주주의의 권력구조를 예로 들어 본다면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

의 삼권(三權)이 극도로 배타적으로 분리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는 입법, 사법, 행정의 분리가 되고는 있으나 옛날처럼 배타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테두리에서 하나로 승화되는 차원에서 분리되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변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정부의 역할이 입법부나 사법부와 비교가 안될만큼 커져간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전적 의미에 있어서의 민주주의는 정부가 될 수 있는대로 간섭을 적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오늘의 민주주의는 정부가 모든 분야에 크게 관여함으로써 갖가지 모순(矛盾)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해 간다는데 그 특색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이 이렇게 발전됨에 따라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일반적 경향이다.

그래서 신문학자들은 정부와 언론의 새로운 관계를 조성관계(助成關係) 또는 참여관계(參與關係)라고 표현하고 있다. (註1)

다시 말하면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언론은 대립적 위치에 있다기 보다는 정부가 언론을 매체(媒体)로 하여 국민과의 쌍방 커뮤니케이션의 한쪽이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는 신문등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국민에게 뉴우스, 의견, 정책등을 알리고 또 반대로 신문등 「매스메디아」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註2) 이것이 곧 정부와 언론의 조성관계 또는 참여관계이다.

정부와 언론의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우리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는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언론의 특색은 선진국에 비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월등히 크다는 사실이다. 가령 1960년에 있었던 4.19혁명을 계로 든다면 학생을 선두로 하는 많은 국민들이 맨주먹으로 쫓겨나서 부패한 정권을 쓰러뜨릴수 있었다는 것은 국민을 그렇게 물고간 언론의 힘이 절대적이었다는데 누구나 동의하지 않을수 없다.

4.19의 경우에 볼수 있었던 것과 같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언론은 국가개발 또는 국가근대화에 큰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것은 언론이 국가의식(國家意識)의 고취, 국가발전의 국민의 적극적 참여, 국가목표실현에의 국민의 합의등에 결정적인 중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언론의 기능은 대체로 보도기능(報道機能), 유도기능(誘導機能), 논평기능(論評機能), 오락기능(娛樂機能), 수익기능(收益機能), 광고기능(廣告機能) 등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리 한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보도기능, 논평기능, 유도기능등이 국민의 여론조성에 결정적인 힘을

발휘한다고 말할 수 있다.

5.16 혁명 후 정부에서 공보관(公報官) 제도를 광범하게 만들어 언론을 매개체로 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사례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언론의 힘이 결정적으로 크다는 데 연유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언론이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일찌기 「유네스코」에 의해 조사된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개발도상국의 언론(매스메디아)은 뉴우스를 제공한다는 통상적인 목적외에 교육의 유력한 도구로 봉사할수 있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 수세기에 걸쳐 이룩한 일들을 개발도상국은 수년내에 성취시켜야 하는데 이럴 경우 전통적인 교육수단만 가지고는 부적당하기 때문에 「매스메디아」를 통해 국민을 교육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언론이 중요한 「인센티브」를 불러 일으킬수 있다는 것이다.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이러한 분석은 우리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또 오랜세월동안 외적의 식민지로서 신음해 왔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빈곤과 문맹(文盲) 때문에 정부의 원조없이 「매스메디아」가 발전할 수 없는 숙명을 대개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정부가 언론을 많이 「컨트롤」하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다. 언론이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또 경제적 빈곤에서 연유되는 언론기관의 취약성이라는 두가지 이유때문에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하여 월등히 밀착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정부와 언론의 상호관계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왕왕 종속관계로 타락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발전추세에 발맞추어 생기는 참여관계라면 이는 절대적으로 환영할 일이지만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 시키기 위해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밀착된다면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생명선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특히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서로 독립된 위치에서 국가목표를 위해 협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 말할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많은 이견(異見)들이 다같이 수렴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그것으로 전체를 귀일(歸一)시키는 제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공통되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그것을 양자(兩者)의 가교(架橋)로 삼아야 한다.

제 3 절 국가안보와 보도의 관리 (管理)

오늘의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대립적 위치에서 점차 협조적 위치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협조적 관계가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허다한 이견(異見)들이 있다. 그 가장 두드러진 예(例)가 바로 국가안보(또는 국가이익)에 관한 보도의 관리(管理) 문제이다.

국가안보 또는 국가이익에 관한 문제는 일찍이 「케네디」미국 대통령이 「이것이 뉴우스냐고 하기전에 이것이 국가이익인가를 생각하라」(註3)고 말한것 처럼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항상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어느 나라의 신문(라디오, TV)을 막론하고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보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와 언론의 제약은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면에서 늘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① 어떤것이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것인가 ② 국가안보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문제 때문이다. 우선 국가안보라고 하는 것은 얼핏 생각하면 그 개념이 명백한것 같으나 깊이 따지고 들면 꽤 애매한 점이 많다. 오늘의 국가대국가(國家對國家)의 관계는 무력대결이거나 평화적인 경쟁이거나를 막론하고 총력전(總力戰)의 양상으로 벌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기밀이나 적정(敵情)에 관계되는것 만이 국가안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움직임, 심지어는 오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는 대상은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국가안보에 관련 시켜 보도에 제약을 가하려 든다면 언론은 일체를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괴상한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되고 어떤 것이 국가안보와 관련되지 않는가를 딱 부러지게 구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는 국가안보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것을 누가 결정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시비의 최종적인 판결은 사법부(司法府)가 맡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와 언론간에 국가안보에 관해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이(利)로우냐 해로우냐 하는 시비가 생겼을때 이것을 법정으로 가져가 법의 판정을 받아 보는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말할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법의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사후처리에 속하는 일이고 당장 국민에게 보도를 해야 하는 시

간에 쫓기는 [매스미디어]의 입장에서 보면 (또는 시기를 중시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시비의 판결을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무때나 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와의 저촉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문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어떤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이로우냐 해로우냐 하는 데 대해 정부와 언론이 날카롭게 맞선 예는 최근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욕 타임즈」의 월남(越南)전쟁에 대한 국방성기밀문서 보도사건을 들 수 있다. 이 문서를 보도한 신문사측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 보다도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반대로 그러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국가안보가 크게 위협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판가름은 마침내 법원으로 가져가 법의 판결로써 매듭을 짓게 했다.

국가안보와 보도의 관리(또는 통제)문제는 어느나라에서나 항상 이렇게 말쟁을 빚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예외없이 도습되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면 대개의 경우 안보에 저촉되는 대상의 내용과 결정은 정부가 하고 있다. 이 점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엄연히 존재하는 사실일지라도 그것이 알려지면 국가안보에 해롭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뉘어둠으로써 보도를 관리한다. 또 정부는 알려진 사실일지라도 보도되는 것이 해롭다고 판단되면 「매스미디어」에 대해 보도관제를 요청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일지라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일방통행적으로 국가안보의 내용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보도가 관리되고 관제되는 것이 오늘의 숨길수 없는 흐름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라는 것은 논리상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인만큼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을 정부가 결정하고 언론이 이에 따라간다는 것은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큰 모순은 없다.

그러나 정부의 책임있는 공무원이 국가이익을 염두에 두고 전문분야의 인사와 협의한후 양심적이고 공정한 보도관제사항을 결정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시버트(Fred S. Siebert)교수의 주장처럼 「정부관리들이 사회의 이익이나 국민의 이익을 옹호하기 보다 자신들의 관료적인 위치를 보존하려는데 더 흥미를 갖고 있는지... (中略)... 또는 발표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나중에 책임을 진다든지 입장이 난처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註4) 국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일이 있다면

정부의 일방적인 보도관제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 한다. 형식논리적으로 볼때 아무리 국민에 의해 구성되는 정부라 할지라도 사실적으로는 「시버트」교수가 지적하는 이러한 폐단이 없을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에 있어서는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일방적인 보도관제가 배제되고 언론이 자율적으로 국가안보에 관련되는 사항을 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율적인 결정이 정부의 의사와 어긋날때 이의관정을 사법부에 맡기는 절차를 밟아 정부와의 마찰을 조정해 나가려 하고 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뉴욕·타임즈」지의 국방성 기밀문서 보도사건의 전말은 이러한 노력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모델 케이스」라 할수 있다.

제 4 절 한국에 있어서의 현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지만 국토의 반이 공산괴뢰집단에게 강점 당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비하여 여러가지 제약을 불가피하게 받고 있다. 더우기 6·25 전쟁으로 국토의 내부분이 공산군에게 짓밟혔던 쓰라린 경험이 있고 오늘날도 공산집단으로부터 끊임 없는 도발을 받고 있는 준전시상태(準戰時狀態)에 놓여 있는 것이 한국의 오늘이다.

국가가 놓인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다른 선진 민주 국가의 언론에 비하여 많은 제약을 받는다. 특히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우선 국가안보에 관하여 한국의 언론은 기본적으로 몇 개의 법적 제약(法的制約)을 받고 있다.

헌법 제 18 조 1 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제 32 조 2 항에서는 일반적인 유보(留保)를 두어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뜻을 박고 있다.

법률로써 언론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중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으로는 (1) 반공법 (2) 형법 (3) 군형법 (4) 제엄법 (5) 해군기지법 (6) 국가보위법등을 비롯하여 여러 보안업무규정과 또 신문윤리요강등이 있다. 이 법률 및 규정들이 언론을 제약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체로 일반이적(利敵)행위와 반국가(反國家)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등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언론이 이 법률을 위반했다 하여 기소된 사례와 그것이 어떻게 법의 판결을 받았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본논문 제 2 장에

상세히 그 실태가 분석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거니와 아뭏든 이러한 여러가지 법률때문에 원천적인 제약이 있는 것이 한국의 실태라 할수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해 한국의 언론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태는 이러한 법률에서 보다는도 강한 행정부의 보도관제에서 더 많이 연유되고 있다. 오늘날 언론계가 당면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국가안보상 무엇 무엇을 보도하지 말라는 행정부 당국의 요청이 일일이 예거할수 없을만큼 많다. 행정부나 수사당국이 요청해 오는 보도관제의 내용이 위에 명시한 법률에 해당되는 것인지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를 따져볼 겨를도 없이 행정부의 지시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곧 오늘의 한국의 실정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요청하는 보도관제의 내용이 승복할수 없는 것이어서 언론기관이 이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영장(令狀)도 없이 언론인을 수사기관에 불법적으로 연행하여 폭력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례가 있을뿐 아니라 행정력을 동원하여 언론기관을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음으로써 정부정책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한국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여러번 설명한 바와 같이 언론의 기능이나 구조는 그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이므로 언론을 제약하는 법률이 있다든가 보도관제를 요청하는 행정부의 행위가 있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쥐를 잡기위해 독을 깨어서는 안되는것 처럼 언론에 대한 제약은 합헌적(合憲的)이어야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만약 언론에 대한 통제와 제약이 이러한 원칙을 벗어 날때 자유민주주의라는 국가의 기본질서는 무너지고 만다. 국가안보와 언론의 관제에서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한국적 과제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조화의 기준을 찾느냐하는데 있다. 우리가 당면한 조화의 기준을 찾는 이 작업은 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다같이 살리기 위해서는 꼭 여기에 성공해야 하는 것이 지상과제라 할 수 있다.

제 5 절 앞으로의 방향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안보와 언론에 관한 이론적인 제문제와 또 한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에 대해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끄집어 내야할 것인가. 다시말하면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앞으로 한국 언론은 어떠한 기본방향을 취해야

할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과 같이 내려보기로 한다.

1. 한국은 공산괴뢰집단에게 국토의 반을 강점 당하고 있고 또 그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기때문에 한국의 언론은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위해 다른 이익을 불가피하게 희생시켜야 한다.

2. 국가안보의 개념은 헌법을 비롯한 법률의 대두리 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자의(恣意)로 확대 해석되어서도 안된다.

3. 어떤 사항이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느냐 하는 가부(可否)의 결정권은 정부만이 가져서도 안되고 언론만이 가져서도 안된다.

현대사회가 복잡해 감에따라 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안보의 결정권을 정부가 행사하고 있고 또 이에 따라 보도의 관리나 보도의 관계가 정부에 의해 거의 일방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판단이 반드시 완벽하고 옳다고 말할수는 없다. 정부가 생각하는 국가안보와 언론 또는 국민이 생각하는 국가안보와는 차이가 있을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이나 국민이 생각하는 안보관(安保觀)이 옳을 때도 있다. 그러므로 안보에 대한 저촉여부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정부가 주도권을 쥐는 경우라도 사전에 정부와 언론이 서로 의논할수 있는 대화의 길을 제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다 나은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하여, 또 신문은 보다 더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정부와 언론은 현재와 같은 산발적인 「백그라운드 브리핑」제도를 합리적으로 확대시키든가 또는 권위있는 신문평의회 같은것을 구성하여 정부와 신문의 책임자가 회담하여 신문으로 하여금 방관자가 아니라 참여자로서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에 보다 더 크게 참여 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

4. 정부와 언론이 국가안보에 관한 해석에서 충돌할 때에는 그 판단을 사법부의 유권해석에 맡겨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럴 경우 사법부의 판결에 맡기기에 앞서 행정부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굴복시키려 하는데 이런 현상은 자유민주주의의 생명을 위협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5.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국가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또 민주언론이 짊어진 숭고한 사명을 투철히 인식하고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기위한 자기와 또 국민의 알 권리를 희생시키지 않기 위한 보도의 조화된 균형점을 스스로 찾는 부단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국가안보문제에 대해 한국 언론이 앞으로 가져야할 보도의 기본 방향은 위에 지적한 5개의 사항이 토대가 되는 선(線)에서 정

종 구 분		중 통	중 1	중 2	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기타	평균	일자
신	전 북 일 보			1	1			1				18
	영 남 일 보			2	2			2				18
	대 구 일 보		2	1	3			3				18
	부 산 일 보		1		1			1				17
	중 도 일 보		1		1			1				18
	전 남 매 일	1		2	3	1		2				18
소 계		1	24	46	71	15	4	39	4	10		
통	동 양 통 신		2	1	3			1	1	1		2
	시 사 통 신		3	1	4			2	1	1		2
	합 동 통 신		2	3	5			3	1	1		2
	동 화 통 신		1	2				2		1		2
소 계			8	7	15			8	3	4		
방	서울중앙방송		2	3	5	3		2				2
	동 아 방 송		1	2	3		1		1	1		2
	문 화 방 송			2	2	1		1				2
	동 양 방 송		2	3	5	2		1		2		2
	기독교 방송		1	1	2			1		1		2
	부 산 방 송	1	3	3	7	1		4		2		2
	대 구 방 송		1	4	5			5				2
	광 주 방 송	1	1	2	4			3		1		2
	강 룡 방 송		1	1	2	1	1					2
	속 초 방 송		1	1	2			2				2
소 계		2	13	22	37	8	2	19	1	7		
불 명		1	16	25	42	7	6	21	5	3		
총 계		4	61	100	165	30	11	87	13	24		

립 되어야 한다.

- 주(註) ① Fred·S· Siebert, "Communication and Govern-
ment" in Mass Communication ed, by Wilbur
Schram 1960. p.p 219 ~ 226
- ② Zecharish Chaffee "Government and Mass Com-
munications. Vol,I 1947. p.p 3 ~ 4
- ③ Editor and publisher, May 6, 1961. p.p112
Journalism Quarterly, Winter 1964. p.5
- ④ 케이터 더클러스 「정부기밀과 보도의 자유」
1965.2 p.52

북괴의 남한매스콤 역이용도 분석
(71년 10월, 11월)

구분 월별	정 치		경 계		사 회		군 사		기 타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0월	24건	14%	10건	6%	130건	76%	5건	3%	2건	1%	171건
11월	30"	19"	11"	7"	87"	53"	13"	17"	24"	14"	165"
누계	6"	5"	1"	1"	-43"	-23"	8"	4"	22"	13"	

[「메디아」별 역용보도회수]

구분 월별	신 문		통 신		방 송		출 처 불 명		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10월	90건	53%	12건	7%	41건	24%	28건	16%	171건
11월	71"	43"	15"	9"	37"	22"	42"	36"	165"
증 감	-19"	-10"	3"	2"	-4"	-2"	14"	20"	-6"

11월중 북괴 제1, 2방송 및 조선중앙통신의 역이용도

※ 평균일자 : 한국 「매스콤」의 보도가 북괴에서 역용될때 까지의 평균일자

구분 종별	중통	중1	중2	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기타	평균 일자	
신	중앙일보		1	4	5		1	3		1	16
	동아일보		3	6	9	2	1	4		2	16
	조선일보		2	3	5	4		1			16
	한국일보			6	6	4		2			16
	신아일보		3	3	6	2	1	3			17
	대한일보		2	3	5	1		2	1	1	17
문	경향신문		1	3	4	1		3			17
	서울신문		1	4	5			1	2	2	16
	경기매일		5	6	11			7		4	17
	강원일보		1	1	2			1	1		17
	충청일보		1	1	2			2			18

종 별	구 분	구분				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기타	평균	일자
		중통	중 1	중 2	중 3								
신 문	전북일보			1	1			1				18	
	영남일보			2	2			2				18	
	대구일보		2	1	3			3				18	
	부산일보		1		1			1				17	
	중도일보		1		1			1				18	
	전남매일	1		2	3	1		2				18	
	소계	1	2	4	7	15	4	39	4	10			
통 신	동양통신		2	1	3			1	1	1		2	
	시사통신		3	1	4			2	1	1		2	
	합동통신		2	3	5			3	1	1		2	
	동화통신		1	2				2		1		2	
	소계		8	7	15			8	3	4			
방 송	서울중앙방송		2	3	5	3		2				2	
	동아방송		1	2	3		1		1	1		2	
	문화방송			2	2	1		1				2	
	동양방송		2	3	5	2		1		2		2	
	기독교방송		1	1	2			1		1		2	
	부산방송	1	3	3	7	1		4		2		2	
	대구방송		1	4	5			5				2	
	광주방송	1	1	2	4			3		1		2	
	강릉방송		1	1	2	1	1					2	
	속초방송		1	1	2			2				2	
	소계	2	13	22	37	8	2	19	1	7			
불 명		1	16	25	42	7	6	21	5	3			
총 계		4	61	100	165	30	11	87	13	24			

11 월 중 북피가 한국의 「매스콤」을 역용 보도한 선전선동 문구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중앙일보	10.30	중 2	영등포구 신길동 주민들 투쟁
	31	중 1	서울 신림동 일대 주민들, 농성투쟁
	11.10	중 2	남조선에서 쌀기근과 물가소동 극심
	12	"	○도당 서울대 산하 5개 학생회장 강제 징집책동
	13	"	남조선에서 전염병이 계속만연
동아일보	10.30	중 2	서울대학교 학생들 등교거부 투쟁
	11. 1		○도당 남조선 대학생들을 강제로 괴뢰군에 입영
	2	중 1	○도당 투쟁의 앞장에 섰던 청년학생들을 체포
	4		남조선 기자들, 괴뢰 경찰국에 항의
	8	중 2	서울 시내 운수부문 노동자들 투쟁
	9		남조선에서 교통사고 격증
	13		남조선에서 괴뢰군 살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1	중 1	○도당 폭압소동에 발광
23	중 2	괴뢰 경찰 무고한 주민들에게 폭행 감행	
조선일보	11. 5	중 2	○도당 「캄보디아」파병을 음모
	7		○도당 악의에 찬 반공소동에 광분
	10	중 1	남조선 각지 노동자들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
	13	중 2	미제가 남조선에 장비를 끌어들이려고 책동
	19	중 1	○도당 고대생을 학교에서 내쫓는 만행을 감행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한국일보	11. 2	중 2	이문동 삼성교통회사 차장들 투쟁
	4	"	○도당 농민들에게서 양곡수탈 채동 감행
	6	"	○도당 남조선 청년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
	13	"	○도당이 외국 독점자본을 끌어들이기에 광분
	15	"	○도당 학생들을 내란음모 행위로 구속
	17	"	이화여대생들 차별학생구제위한 서명운동 전개결의
신아일보	10.20	중 1	서울 시내 주민들 체불 노임을 요구하여 투쟁
	11.10	"	○도당 양곡수탈에 혈안
	13	중 2	○도당 세금수탈 소동
	17	중 1	남조선에서 경제위기 극심
	19	중 2	서울의 영차 실업회사 악질기업주 노동자들을 착취
	23	"	○도당 용산구 이천동에서 주택 강제철거
대한일보	10.20	중 1	서울대학교 10개 단과대 학생들 등교거부
	11. 2	"	투쟁 전개
		중 2	○도당 학생들에게서 교련수강 서약서를 받아내기 위한 소동 감행
	4	"	동대문구 답십리동 천일 두부공장 노동자들 투쟁
	12	중 1	남조선 교역장들에서 노동재해 계속
	21	중 2	○도당 새전쟁 도발 채동에 더욱 광분
경향신문	10.26	중 1	○도당 폭압기구를 확장하려 광분
	11. 1	중 2	남조선에서 음료수기근
	10	"	현대건설에 고용된 노동자들 체불임금 요구 소송제기
	22	"	남조선 중소기업체들 파산몰락 일보에 직면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서울신문	10.29	중 2	전국대학생들 투쟁 계속
	11. 7	"	남조선 괴뢰 육군병사 정모 부대탈출
	13	"	미제의 전쟁 연습에서 추태 계속
	11.15	중 1	미제침략자들 남조선에서 전쟁연습소동에 발광
	20	중 2	○도당 후방지역 경비훈련에 광분
경기매일	10.25	중 2	인천 차량공업노동자들 착취를 반대하여 투쟁
	"	중 1	인천 태양공업공장 노동자들 체불노임을 요구하여 투쟁
	11. 3	"	인천시 경성공작소 노동자들 체불노임을 요구하여 억세제 투쟁
	5	"	남조선 청년들 경기도 파주에서 무기탈취
	"	"	경기도 의정부 시내의 상인들 결히 투쟁
	10	중 2	경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주택난 극심
	15	"	미군, 평택에서 살인 만행 감행
	20	"	인천 제복부문 노동자들 파업투쟁
	21	"	인천 부두노동자들 체불노임을 요구하여 투쟁
	"	중 1	인천 버스조립공장 노동자들 투쟁
	23	중 2	괴뢰 경찰 김포비행장에서 만행
강원일보	11. 1	중 2	화천군 일대 군용차량 사고참사
	15	중 1	강원도 춘천 시내 주민들 투쟁
충청일보	11. 6	중 2	충남 연기군내 농민들, 농토반환을 요구하여 투쟁
	21	중 1	청주시내 노동자들 투쟁
전북일보	10.31	중 2	군산수산전문학교 학생들, 폭력교원 처단을 요구하여 투쟁
영남일보	11.17	중 2	진해 화학공장 노동자들 투쟁
	23	"	경남 진주시내 주민들 투쟁
대구일보	11.19	중 1	경북 경산군내 운수부문노동자들, 파업투쟁
	20	중 2	경북 영양군 농민들 투쟁
	21	중 1	경북 영양군 무남동내 주민들 투쟁

종 별	일자	구 분	내 용
부산일보	10.26	중 1	부산진구 부전동의 주민 ○도당의 매국적 만행규탄
중도일보	10.26	중 1	대전의 충남고등학교 학생들 학업조건 보장 요구
전남매일	10.26	중 통	고흥군내 주민들 경찰대, 탄압을 반대
	27	중 2	전남 장흥군 농민들 투쟁
	30	"	전남 남원군 상인들 투쟁
동양통신	11. 4	중 1	서울 영등포구 영세주민들, 주택철거 반대 투쟁
	14	중 2	부산에서 미제 침략군 만행 감행
	20	중 1	일본 해적선 남조선 어민들에게 만행
	10.29	중 2	논산군 벌곡면 내 주민들 의료시설을 요구해서 투쟁
시사통신	11.10	중 1	경기도 양주군내 주민들 투쟁
	13	"	일 해적선 울산 앞바다까지 침투
	19	"	○도당 전북군산 지방에서 세금수탈에 혈안
	11. 1	중 1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의 노동자들 투쟁
합동통신	4	중 2	서울 북부경찰서 경찰들, 취재기자들에게 폭행
	7	"	남조선피뢰 육군병사 정모, 부대탈출
	13	중 1	서울 성동구 성수동내 주민들 투쟁
	19	중 2	성동구 옥수동내 주민들 음료수시설 철거 반대 투쟁
	11. 1	중 2	이리 원광대 학생들 모독 중상을 규탄
동화통신	4	중 1	서울 영신 교통회사 노동자들 투쟁
	9	중 2	서울시내 운수부문 노동자들 임금인상 요구 투쟁
	10.29	중 2	○도당 남조선대학생 40명을 논산훈련소에 강제입영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서울중앙방송	10.31	중 1	서울대학교 단과대 학생들, 등교 거부 투쟁 전개
	11. 9	중 2	○도당 남조선주민들을 해외에 팔아넘기려 책동
	10	"	○도당 지역방위군 조작행동에 광분
	16	중 1	의정부서 미제기관 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
동아방송	11. 2	중 2	신문, 기자협회 언론탄압 행위를 규탄
	9	"	남조선 중소기업체들 파산몰락
	16	중 1	경기도 평택에서 미제 야수가 2명의 주민을 살상
문화방송	11. 3	중 2	○도당 남조선 청년들을 강제징집
	8	"	고려대학교 학생들 투쟁
동양방송	11. 2	중 2	남조선 청년학생들 ○도당이 10.15. 이후 조치에 대해 격분 표시
	5	"	○도당 노동자들을 해외로 팔아 먹으려고 책동
	8	중 1	○도당 박아무개에게 사형선고
	14	중 2	부산에서 미제침략군 만행 감행
	20	중 1	일본해적선 남조선 어민들에게 만행
기독교방송	11. 4	중 1	서울 신학대학 관계자들 ○도당을 규탄하는 성명발표
	7	중 2	미제 전쟁 상인들 7일 서울에 도착 예정
부산방송	10.26	중 통	울산시 주민 피해보상 요구
	27	중 2	미제 침략군 부산에서 감행
	11. 3	"	경북 영일군내 수산고등학교 학생들 수업을 거부
	6	"	부산의 한 주민, 땅을 찾기위해 투쟁을 전개
부산방송	11.15	중 1	미군 부산에서 극악한 만행 감행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부산방송	11.18	중 1	부산주민들, 헌병놈을 징벌
	20	"	경북 경산군내 운수부문 노동자들 투쟁
대구방송	10.25	중 1	대구시내 영세주민들, 세금수탈을 반대하여 투쟁
	26	중 2	울산시 심산동의 농민들 피해 보상요구
	27	"	대구주민들 미계의 만행을 반대하여 투쟁
	11. 9	"	대구시내 주민들, 생활조건을 요구하여 투쟁
	24	"	경북 금릉군내 농민들 농작물피해 보상을 요구
광주방송	10.26	중 통	전남 나주 호남비료회사 노동자들 투쟁에서 승리
	"	중 2	전남 고흥군 정강면내 주민들 경찰대의 만행 규탄
	11. 5	중 1	전남대학교 학생들 시험을 거부
	17	중 2	전남 나주군 광업소 노동자들 체불노임 요구 투쟁
강릉방송	11.10	중 1	○도당 양곡수탈에 혈안
	16	중 2	강원도에서 또 30여개의 탄광들이 파산 불락
속초방송	11. 1	중 2	강원도 일대 어민들 생활난에 봉착
		중 1	고흥군내 주민들 전투 경찰대의 만행에 항거
불 명	10.25	중 2	서울시내 버스 차장들 시위 투쟁을 전개
	"	"	○도당 남조선 어민들을 탄압
	"	"	동해안에서 미군기 2대 충돌
	26	중 통	부산주민들 ○도당을 규탄
	27	중 2	남조선의 한 종교단체 성명
	29	중 2	포사격 훈련에서 남조선 병사 3명 사살
	30	중 2	서울에서 미계침략군 만행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불 명	11. 2	중 2	서울에서 ○도당의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빼라 출현
	3	중 1	노량진동에서 해군이 양민에게 만행
	5	중 2	남조선에서 남북간 체육문화교류 주장 여론 고조
	"	"	○도당의 무장간첩 전선서부에 침투
	"	"	○도당 학생지도 교수 분담제 조작책동
	6	중 1	영동읍내 부형들, 수탈을 반대하여 투쟁
	"	중 2	서울대 상대 세적학생들 법정투쟁을 전개
	8	중 1	○도당 인민들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 막기 위한 탄압책동 강화
	"	중 2	대구주민들 식량을 위해 투쟁
	"	"	남조선 각지 노동자들 삶을 위하여 투쟁
	"	"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학부형들 투쟁
	10	중 1	연세대학교 학생들 투쟁결의
	"	"	연세대 간행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논설 게재
	12	중 1	남조선의 한병사 상관을 사살
	"	중 2	남조선 17개사회단체들 항의서 제출
	"	"	남조선 한 인권옹호단체가 항의문 발표
	"	"	노동자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13	중 1	남조선 중고단체 공동교서 발표
	"	"	대구시내 주민들 식량을 구하기 위해 투쟁
	"	중 2	○도당이 인민들을 탄압
11.14	중 2	남조선 노동자들 요구조건 관철	
15	중 1	○도당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 학생들 탄압	
16	중 2	○도당과 악질기업주들 노동사건 연장을 강요	
11.17	중 1	○도당, 남조선 노동자들을 착취	

종 별	일 자	구 분	내 용
불 명	11. 17	중 2	남조선 남해안 어민들 굶주림에 신음
	18	중 2	서울법대 사법연수원생들 투쟁
	19	"	남조선 각지 영세상인들 시장철거 반대와 세금수탈 반대
	20	"	○도당 땅을 외국약탈자들에게 팔아넘김
	21	중 1	○도당 애국적 인사들을 체포구금
	22	"	남조선의 각지 농민들 수탈책동 반대 투쟁
	23	"	남조선 농민들 생활난으로 이농
	24	"	○도당 언론인 탄압을 강화하려 책동
	"	"	아현동 김모일행, 경찰놈의 죄행을 규탄
	"	"	남조선 4.19 회 성명발표

제 II 장 북한 및 공산권 문제에 대한 보도현황

제 1 절 개황과 문제점

한국에서의 공산권 및 북한문제보도는 71년 8월 12일 한국적십자사의 남북이산(離散)가족찾기회담제의를 기점으로 그 이전을 금기(禁忌)의 시기 그 이후를 해빙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 71년 12월 6일의 비상사태(非常事態)선언과 72년 2월 21일 닉슨의 중공방문을 계기로 「죽의 장막」(竹의 帳幕) 중공과 북한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과 적극적인 보도에 들어갔으나 4월 15일 김일성(金日成) 회갑시기를 기점으로 대북한문제보도는 정책적인 이유로 철저한 규제(規制)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적십자회담 이전까지 우리의 북한문제에 대한 언론의 금기적 태도는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배경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冷戰)의 부산물로 강요된데다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괴의 불법집단의 등장은 한국정부의 법통에 정면으로 도전해 온 것이다. 더우기 6.25의 비극은 북한에 대한 감정적인 증오를 더하게 했다는 전반적인 국민감정 때문에 필연적으로 북한 및 공산권문제보도는 기피됐었다.

이러한 국민의 반공, 멸공, 승공이란 감정과 함께 반공법, 국가보안법, 계엄법, 형법, 군형법(軍刑法)등 현행관계법은 한결 공산권 및 북한문제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적십자회담 이후 한국은 특히 「닉슨미국대통령의 중공방문과 소련방문결정을 전후해 해빙 「무드」속에 남북의 대화는 반공법등 관계법운용에 전에 없이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최두선(崔斗善)한국적십자사총재의 가족찾기제 의와 남북적십자회담 직통전화가설등은 반공법 위반의 시비를 불러일으킬 문제지만 사범당국의 법해석 태도는 펴 온화하다. 관계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 운용에 있어 신축성을 보이고 있는 당국의 태도는 시대사조의 흐름에 부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언론도 점차 금기의식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고 있으나 관계법의 존속때문에 애매한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법의운용을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을 기점으로 공산권 및 북한문제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의 흐름을 살펴본다.

남북적십자회담이전의 경우를 보면 64년 11월에 발행된 「세대」지 12월호에 실린 문화방송사장 황용주(黃龍周)씨의 「강력한 통일

정부에의 의지라는 제목의 논문이 반공법(反共法) 제4조 위반으로 구속이 되어 65년 4월 30일 서울형사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국가공무원 및 기타취직에 따르는 신원조회에서 반공법위반의 전파나 경험은 거의 기피인물로 낙인찍혔다.

따라서 반공법에 저촉될 염려가 있는 공산권문제의 보도는 언론계에서 타부시 왔었다.

이러한 현상은 5.16 혁명으로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있는 현정부체제 밑에서 특히 북한문제보도에 대한 정부와 언론과산의 가치기준설정(價值基準設定)이나 판단권이 이른바 당국에 의해 전담되어왔다는 뜻이 더욱 북한문제보도에 대한 제약이되기도 했다.

반공법위반여부도 관계수사기관에 의해 입건조사를 거쳐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로 밝혀지지만 문제는 임의동행이란 형식의 강제전행으로 재판과정보다는 수사심문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육체적고통과 당국의 발행인에 대한 압력은 당해기의 신분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해 당국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아예 외면했던 것이다.

반공법 제4조의 해석 특히 동법의 해석에서 항상 원용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Rule)」이 명백하고도 있을 수 있는 위협의 원칙(Clear and Probable Danger Rule)에로 확대해석됨에 따라 수사당국의 지나친 간섭이 전대적인 제약을 주었다고 하겠다.

더우기 상기의 원칙에 대한 기준설정과 판단에 전적으로 당국에 달렸다는 뜻이 한국의 숨김없는 실정이라 말할 수 있다.

각법원에서 동조의 적용에 있어서 「적을 해롭게 한다는 인식」이 책임조건으로 판단하여왔으나 「적을 이롭게 한다」는 요건에 대한 입증의 국난성이 지적되고 있다(법조시보 64호 반공법의 내용과 실제 洪용기의원좌담)

66년 6월 30일 박한상(朴漢相)의원등이 제안한 국가안전유지법안(國家安全維持法案)에서 동조문의 불건실한 해석에서 나오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막기위해 이른바 목적법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도 결국 구체적인 소송기술과 법관의 심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질수밖에 없어 역시 이적(利敵)의 기준은 수사당국이나 법원에 전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산권보도로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었다. 반공이라는 국민감정에 비추어 누구나 이법의 피의자도 되고 있지않다는 경향때문에 공산권문제라면 지레 타부시해 버렸던 것이 8.12선언 이전의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68년 1.21 사건 이후 연평균 5백건의 정전협정위반사건과 71년도의 2천 4백 83건이라는 엄청난 북괴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피상적인 북괴의 만행만이 규탄됐을 뿐이다. 북괴의 대남전략전술에 대한 분석 평가와 규탄은 언론기관의 자료접근의 불가능과 당국의 비밀취급인가의 통제 및 자료제공이 없어 무장공비등 남과간첩에 대한 사회면적인 만행과 참경을 보도하는데 그치었다. 이시기는 단절의 시기이기도 했다.

이러한 금기 내지는 단절의 시기를 넘어 71년 8.12 계의 이후 북맹증(北盲症)에 대한 자각의식과 국가적인 해방무드에 따라 종전과 같은 단절일변도의 대공 특히 북한문제보도가 지양되면서 언론기관의 공산권문제연구기관설치 세미나 개최 전문기자양성등의 움직임과 각방송 TV에서의 적극적인 안보관계「프로」마련등은 당국의 대폭적인 대공문제 보도회의 완화를 뜻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반공법과 언론과의 함수관계가 재판에서의 유무죄의 판결이 아닌 동범을 운용하는 당국의 규제가 더 크게 작용했다는 앞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71년도 각신문의 연말특집과 신년호 특집이 거의가 북한이나 남북한의 대비를 기했다는 것이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닉슨의 중공방문선언 이후에 나온 8.12가족찾기제의 도 사실상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의 현실적 추정을 뜻했다는 점이 정부의 대공문제보도에 대한 신축성을 드러냈다고 하겠다.

그러나 비상사태선언 후 위축된 언론의 공산권 및 북한문제보도는 비상사태선언의 제일명분인 북으로부터의 남침위협외의 잠재적 가능성을 종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치 당국의 자료제공과 적극적인 제재요망에 각자 다투어 폭로했고 북괴의 전쟁·준비상을 보도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은 닉슨 중공방문을 전후한 중공의 소개나 모택동(毛沢東)과 주은래(周恩來) 기타 중공인물에 대한 보도는 별다른 편견없이 다루었으나 아직도 북한문제에 관한한 종래의 경화증(硬化症)을 풀지 못하고 있다.

북한문제를 다루고 보도함에 있어 우리정부와 언론은 지금까지 이와같이 일정한 원칙을 고수해 나왔다기 보다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갈팡 질팡하면서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 2 절 현행법의 언저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언론이 북한문제를

보도하는데 있어 가장 큰 제약을 느끼는 것은 반공법(反共法)을 비롯한 몇개의 현행법이 엄존한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국제정세가 대결에서 대화로 접어든다 하더라도 북괴가 남침을 노리고 있는한 우리나라에는 반공법과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는데는 별로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없다. 특히 김일성(金日成)이 70년 11월 이론편 제5차 노동당대회에서 「역적들과 어떻게 나라의 통일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남조선에 미제 침략토대와 현 괴뢰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유엔(UN)의 평화통일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공공연히 혁명무력통일을 공언한 사실이 수정되지 않는한 우리는 북괴에 대한 경계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몇개의 실정법은 우리가 적극적인 자세에서 대공(對共)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조문(條文)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언론이 적극적인 자세로 북괴에 대항하려면 현행법의 맹점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조건이라 할수 있다.

미국에서 매년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law)의 제정될때 공산당의 조직과 관련된지의 여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정기적 사회적 활동과 불법적인 활동과의 구별이 애대하다고 논쟁이 벌어졌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운동의 경향이나 그들의 목적에 비추어 이들의 활동표현을 규제할 법규의 모호성은 불가피하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의 애매 모호성에 대한 보완은 법관의 명백한 판단에 의존할수 밖에 없다는데 의견이 가우렸고 그런 방향에서 운용상의 신중과 묘를 피할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시말해 「범죄의 주관적 요소에 중점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여도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주관적인 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행위에 관한 규정은 극히 명백해야한다」(문인구 신국가보안법개론 p.52)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가 제1차적인 사상범의 경우는 행위규제의 법규범은 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낳게한다.

문제는 기준이며 기존의 설정자가 법관이나 수사기관(당국)에 있다는데 있다.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한 원칙」에서 「명백하고도 있을수 있는 위협의 원칙」으로의 확대는 1950년 미국에서 「스미스법」에 의한 11명의 고위 공산당지도자들을 소추한 사건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有罪判決의 種目을 보면 「폭력에 의한 政府의 전복을 주장하는 선전은 言論을 制限할만한 실질적 해악을 包含하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건에 있어서 明白하고도 現存하는 위협의 文意는 政府전복 행위가 즉시 실행되려 하거나 계획이 樹立되어 신호단을 기다릴 단계에 이르렀을 때까지 정부가 행동의 개시를 연장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만일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소속원에게 原理를 注入하고 그 지도자가 사정이 허락한다고 생각할 때 그들이 취할 진로는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政府로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5~48년까지 被告 등의 활동이 폭력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그와 같은 기도를 할 용의가 있는 단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당장 소집이 가능하고 훈련된 당원을 가진 고도로 조직된 被告 등의 共謀는 國際關係에 치열한 상태를 빚었다 할 수 있다.

他國에서의 유사한 반란 被告 등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美國)의 일족족발의 관계를 아울러 고찰하면 有罪判決의 정당함을 확신케 한다(Dennis Vs United States 341 U.S. 494, 1951)

이 事件에서 「大法院은 個個의 사건에서 法院은 해악의 重大性이 그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하더라도 言論自由침해를 정당화 하는가를 규명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을 채택함으로써 해악의 重大性이 크면 危險의 긴박성을 동반하고 적어도 言論의 제약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直接・間接 侵略의 위협 아래에 있는 韓國에서의 反共法의 適用은 이상의 두原則이 妥當하다는 문제보다 이의 擴大 要因에서 생기는 부작용이라 하겠다.

그러면 反共法 4條의 찬양 고무 동조등 이 法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문제를 분석해 보자.

反共法의 基本理念이 容共勢力의 直接侵略을 막는 것이라면 적극적인 찬양 고무는 同調도 例示에 불과하며 其他의 소극적인 方法에 대하여도 可罰性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韓沃申 國家保安法 反共法概況 1백 63)

可罰性엔 적극 소극적 활용 어느쪽이든間에 反國家團體를 해롭게 하려는 犯意故意가 있지 않으면 안되며 行爲와 利敵의 意思가 서로 結付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66年 12月 2日 法務部質疑回示에서 밝혔다.

本犯罪의 類型이 結果的責任의 形式으로 되어 있다는 杞憂는 마땅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떻든 「利롭게 한다」는 認識 그 自体가 主觀的 要素이므로 여기서 發生하는 法的 不完全 및 安全性은 問題로 남고 言論의 對共產圈問題의 보도에 대한 제약을 넘어 거의 忌避現狀을 빚게 된 緣由이기도 하다.

同條의 규정의 明確性이 欠했다는 것은 이미 지적했지만 이로인한 行為者가 사전에 犯法여부를 判斷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나 司法府에서 얼마든지 擴大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罪刑法定주의가 無意味하게 되고 소급법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기 쉽다는 이유로 違憲입법이라는 見解가 나오기도 했다. (李丙麟·法律신문 6백 62号 1965.4.5 言論犯의 刑法上的 性質)

특히 其他의 犯罪가 利敵的인 行為를 抱括한 것인지 아니면 「찬양, 고무, 동조」와 共通된 行위를 뜻하는지도 正確한 해석이나 判例가 없이 더욱 애매하다.

「讚揚」「同調」의 해석적응도 펴이나 인의적이며 앞서 말한 것처럼 主觀的判斷은 날가피하다.

이제까지의 反共法 4條의 해석과 이의 性格을 살핀 것은 反共法適用에 있어 基準律로 삼고 있는 「明白하고도 現存하며 있을 수 있는 危險의 原則」의 基準設定이 전적으로 法官과 수사당국 나아가서는 政府에 달려있는가를 證明하기 위함이었다. 다시말해 이러한 判斷에 있어서 犯罪의 要素가 思想이기 때문에 法의 安全性을 해칠 우려가 크며 判斷엔 國家的利益이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現속과 같이 모든 보도에 있어 價值判斷 심지어는 報章에서 생기는 회기반응(回帰反應)(Feed Bark)까지를 當局(政府 및 관계기관)이 專任하고 있어 結果的으로 主觀的이라는 것이 犯하는 誤謬 즉 感情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겠다. 感情이라는 것은 一定하고 一貫된 原則이 定立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달은 곧 現在의 우리나라의 對共產圈 보도에 대한 政府의 形式上 규제요건이었던 反共法 4條의 적용기준의 主觀的要素를 구명하고 主觀的인 것의 오류를 證明하고 主觀的인 原則을 내세울 수 다만 내지는 실지로 第1의 原則으로 삼고 있는 政府도 報章규제에 대한 一貫性 있는 原則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을 證明한 것이다. 물론 一貫性이 없다는 것은 融通性이란 逆說을 자아낼 수 있다는 것은 默過할 수 없지만 諸國이 伸縮性이란 確固한 原則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亂脈이나 無定見을 노정시키게 되고 어떤面에 서는 政府의 이 問題에 대한 평가도 이러한 범주에 든다고도 했다.

다고도 하겠다.

제 3 절 남 북 교 류 론

北韓괴뢰집단이 제안·호소·선전하는 外勢 一切배격, 南北協商 經濟 文化 社會交流 등에 의한 民族自主的 平和統一方案을 강령으로 하는 團體는 反共法第 4 條 1 項 後段의 團體이다. 따라서 이러한 北韓괴뢰집단의 위장된 활동을 인식하고 이롭게 하는 행위(찬양, 고무, 동조)도 反共法의 犯罪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韓沃申 國家保安法 反共法개설 2백 62 P)

4.19 를 전후한 北傀의 南北協商論을 내세운 平和공세는 주도케 다달았다.

政局의 不安定으로 民心의 동요 亂動데모의 성행 國會亂入. 經濟 위기 客共勢力의 대두 등과 함께 민족일보(民族日報)등 친공계렬의 신문이 생겨나 北傀는 友誼法운동을 강화했다.

이러한 政治, 經濟, 社會의 심각한 混亂을 이용 北傀는 平和統一 南北協商 經濟·文化書信 藝術 교류·南北學生회담·南北혼성체육팀·올림픽파견 등을 제안, 南韓의 同調勢力을 넓혀 南韓革命을 시도하는 위장 평화정책으로 南北協商과 交流를 선전했었다.

이러한 北傀의 위장 平和統一 및 南北交流論에 對한 當局의 態度나 立場은 65年 4 月 30 日 前文化放送社長 황용주(黃龍珠)氏의 반공법 위반사건에 대한 서울刑事지법의 判決에서 밝혀졌다.

판결요지를 보면 被告人은 북한괴뢰집단이 정부를 감청하고 국가를 변란한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反國家團體로서 民主共和國인 大韓民國을 전복 赤化시키고자 유엔의 자격과 권능을 주시하고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승인한 韓半島의 유일무이한 합헌국가인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했다. 그리고 유엔군의 합법국적인 대한민국주둔을 미제국주의의 침략 또는 강점이라고 단정하여 반미(反美)사상의 고취와 韓美이간을 회책하고 평화통일방안으로서 ①中立國 감시하의 南北總선거 ②美軍의 즉시철수 ③남북의 경제 문화 예술 체육의 交流 ④南北協商會議의 開催 ⑤南北韓군대의 감축 ⑥南北韓間의 무력 불가침조약의 체결 및 평화협정체결 ⑦南北韓연방제의 실시 등을 주장했다는 것으로 反共法제 4 조 1 항의 罪에 해당한다고 했다.

물론 黃氏의 소론이 60年 8 月 15 日의 金日成연설에서 주장한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의 國內外的인 정세로 미루어 有罪判決한 것이지만 判決의 有無罪에 對한 是非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이와 類似한 性質의 주장은 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점에 注目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南北交流論의 有罪判決은 71年 8월 12일 최두선(崔斗善) 총재의 南北離散家族 찾기 제의와 進行中인 南北赤十字회담 그리고 71년 8월 31일 金外務長官의 3段階統一方案제 의 朴大統領의 8.15 선언과 72年 신년 記者會見으로 크게 變質되었다고 보겠다.

이 中에서도 南北赤十字회담이 非政治的인 南北接觸으로 統一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라면 그 목적은 역시 統一에 있으며 統一이라는 그 自体가 政治的이라면 性格은 政治的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政府나 赤十字社가 애써 政治的 色彩를 배제하는 그 發言이나 취지를 쫓는다면 그것은 反共法에 저촉되는 것은 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本會談 개최때 南北韓赤十字代表 수행원 보도진의 往來로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의 저촉은 어쩔 수 없으며 同法의 改正은 不可避하다 하겠다.

法改正의 不可避性은 對共產圈問題에 대한 狀況의 變化로 看做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政府나 赤十字社가 애써 政治的 危機를 배제하는 그 發言이나 취지를 쫓는다면 그것은 反共法에 저촉되는 것은 反論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本會談 開催때 南北韓赤十字代表 수행원 보도진의 往來로 反共法 및 國家保安法의 저촉은 어쩔 수 없으며 同法의 改正은 不可避하다고 하겠다. 法改正의 不可避性은 對共產圈問題에 대한 狀況의 變化로 看做할 수 밖에 없다. 직면하는 세계 정세속에서 더욱더 北은 中共訪問·中共탁구팀의 美國訪問 등은 우리도 언젠가는 共產國家와의 協商에 직면케 된다는 것을 例示하는 것이나 總국적으로 統一도 괴뢰라는 存在를 否認하고서는 相對가 없어 協商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形態의 인정하에 交涉를 해야 한다고 풀이 된다. 이러한 先조단계로서 이른바 機能的接近으로서 赤十字會談이 進행되고 있다면 60年대의 冷戰體制下에서의 對共觀念이나 反共法適用기준은 是正해야 할 國內外的인 狀況에 밀려들었다고 하겠다.

70年 12월에 政府는 貿易去來法第2條를 改正 非敵性共產國과의 交易門을 개방했다. 71年 9월에는 「유고」와 「체코」에 갓트(GATT) 35조 을 폐지, 交易上의 차별을 없앴다. 이같은 政府의 態度는 아직도 反共法이나 國家保安法의 改正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는 金鍾泌國務總理의 71年 定期國會에서의 答변과 金哲統社黨당수의 구속으로 對內에 向한 強硬策은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二律背反의 立場을 노정시켰다. 政府의 對共產圈接近이나 南北會談지원성명등이 「國家行爲」(Actor of State)(英)政治的問題(Political Question)(美國)이기 때문에 司法權의 審判對象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歐美의 판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政府의 「순수한 정치의 결정」「大權行爲」가 實體法을 넘어선 것이라면 政府의 行爲와 實際法間의 衡平은 遵法이라는 側面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政府의 態度는 言論에 關한 限強樹策이라 평하기보다는 無定見이라고 보아야겠다. 副一性없는 政府의 態度는 當局의 外國刊行物과 新聞검열에서 例를 볼 수 있다.

第 4 節 검 열 제 도

外国刊行物輸入은 61年 12月 30日 法律 第 903号 外国定期刊行物輸入配布에 關한 法律에 依해 規制되고 있다. 同法 第 7条는 國憲을 문란케 하거나 公安 또는 風俗을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外国定期刊行物을 配布한 때에도 公報部長官은 輸入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고 했다. 文公部도 例規 第 6号 (71年 11月 23日)에서 國憲의 內容을 다음과 같이 規制했다.

① 헌법기관모욕 ② 한국실정의 부소개 ③ 공산국의 이념선선소개 ④ 反國家團體나 그 構成員 또는 추종자를 찬양한 것 ⑤ 공산국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其他 생활양상 등에 관한 것으로 自由진영과 對比하여 찬양 ⑥ 其他 國家안녕질서에 害로운 것 등이다. 同法第 6条는 公報部長官은 第 9条 1号에 해당하는 外國정기간행물을 輸入한 때는 배포의 정지 또는 內容의 削除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外國간행물의 검열을 명문화했다.

71년도 1年間に 6백 56건을 撲滅 (삭제) 했다. 71년 1월 11일자 일본 요미우리 (読売) 신문의 金日成 회견, 72년 1월 20일의 마이미찌 (毎日) 신문의 닉슨 訪中후의 韓半島情勢, 71년 1월 21일의 아사히 (朝日) 신문 2월 22일 요미우리 신문의 구독을 禁止시켰다.

그러나 4월 26일자 「수령님과 인민」 領導의 藝術家 金日成 제하의 기사 4월부터 시작된 다이니찌신문의 朝總聯 第 2 副議長 金炳植 (金炳植) 과의 對談記인 「고노히도또」 이 사람과 함께 가깝고도 먼나라 등은 자유배포시켰다. 그런가 하면 5월 11日字 요미우리 신문의 南北韓 遞사가 서로 서울과 平壤을 상호 방문했다는 內容의 기사는 一般에게 구독을 금지시켰다.

일반의 구독금지 된 것이나 되지 않은 것이나를 막론하고 國內新聞에서의 轉載는 許容되지 않았다. 國內新聞에서의 전재불허는 一貫된 것이 라고 하더라도 撲滅한 (削除) 기준은 極히 無원칙하다는 것을 証明하고 있다.

以北放送 청취도 東京駐在 특파원이나 外信은 전재할 수 있으면서도 國內에서 청취보도는 금하고 있다는 것도 「아니로니」 일 수 밖에 없다.

8월 12일 가족찾기제외에 대한 北赤의 회신, 지난 5월 12일 北傀의 越盟派兵등도 모두가 東京경유 아니면 外信을 전재했다는 것도 反共法 4条 1項의 擴大適用이 빚은 결과라고 하겠다. 서울시검 公安部의 의견은 北韓放送의 청취는 동조의 범죄유형에 속한다고 태도를 밝히고 있다.

청취자취조 同調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北韓을 알고 批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基準은 역시 수사당국의 主觀的인 해석 判斷에 달렸다.

「닉슨」의 中共방문결정은 對共觀에 對한 충격을 크게 일으켰다. 비상사태선언 - 닉슨 中共방문 - 金日成回甲을 잇는 期間中에 國內新聞의 경향을 보면 當局의 共產團 및 北韓 문제보도에 對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金日成과 北傀의 權力상층부의 人物은 지난 3월 21일字 中央日報에 金日成의 뒷목에 난 「혹」사진을 게재한 것을 빼고는 한번도 실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와 6.25 동란에서 맞싸워 사실상 統一의 장벽을 이루었던 中共의 모택동(毛沢東)이나 주은래(周恩來) 등 人物사진은 자유로이 쓰고 있다.

71년 12월 各新聞의 年末특집과 新年号는 前에 없이 대담했다. 1월 19일부터 시작된 大韓日報의 「격랑 넘어 多極形成期」로의 연재에서 中共의 權力구조변천에서 中共權力上層人物 12명의 사진을 실었다. 新亞의 1월 1일자는 강인덕(康仁德)씨의 寄稿들로 北韓의 실정을 정주(定州) 賦의 옛사진과 함께 특집했고 京鄕은 「祖國分斷 27년 北韓」에서 北韓의 政治, 軍事, 經濟, 社會, 教育, 文化등을 分野別로 소개했다. 韓國日報은 「對話트인 北韓」으로 北韓의 衣食住 時歲風俗 構造 및 체제 行政區域 教育, 범죄, 월남가족 전쟁준비 노동당기구표 최고인민회의 내각을 圖表로 고쳤다.

京鄕의 南北間 장벽의 견제등으로 北韓문제에 대한 보도는 비교적 지금까지 2급비밀로 취급되던 것이 보도되었다. 그리고 北傀의 南侵야욕이나 戰爭준비상은 1.21사건 특집에서 124군부대의 그 후의 실태도 「京鄕」은 보도했다. 西海어선 남북사건을 계기로 北傀의 對南戰略의 分析등 12.6선언의 名分인 「北의 南侵」 벗기는데 주력 12.6선언의 舍理性을 뒷받침하고 국민에게 인식 선전하는데 주력했다.

「닉슨」中共방문을 前後해 보다 적극적인 對共政策의 필요성과 韓半島문제의 재평가등이 나오는등 비교적 자유스런 共產團보도의 태를 맞는듯 했다. 4월 15일 金日成回甲을 맞아 京鄕, 中央, 新亞가 특집으로 個人偶像化를 비판했으나 4월 12일 이후부터 對北傀비판기사도 일체 보도되지 않았다. 일체 對北傀비판기사는 쓰지 말라는 當局의 指示에 따른 조치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主体의식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침묵에 反해 北傀는 朝聯을 움직여 日本의 有力紙를 통해 계속 선전공세를 펴고 있다는 것은 좋은 對照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현시점에서의 對共產國 특히 北韓관계 기사는 사전검열되고 있다고 하겠다.

검열을 제약의 형태로 본다면 현행법상 언론을 제약하고 있는 법은 언론윤리(言論倫理)위원회법 反共法, 刑法, 海軍基地法, 戒嚴法 保安업무규정등이다. 이러한 재방법규는 대체적으로 언론이 잘 준수한 편이라는 것은 이들 법규나 법을 위반 유죄판결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당국의 생각과 당국의 판단에 의해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에 대한 보도관제 내지는 協助사항위반으로 利敵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거나 가능성있다고 해서 연행되거나 불법감금 혹은 기소된 적이 간혹 일어났다. 사실상 협조나 보도관제라는 당국의 요구가 적법하며 언론의 자유에 우월한가를 判例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① 간첩체포 또는 出現보도와 보도관제 ② 1959년 4월 30일의 京鄕신문에 대한 발행허가취소처분을 할 이유로도 「간첩 汗河를 체포」란 제목의 기사가 당국의 불계개요청에도 고의로 실어 수사에 지장을 주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여사한 종류의 기사도 타신문에도 흔히 볼수 있는 기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가 알아야 할 것인바 서울특별시경찰국사찰과장 崔洛中이 기자에 대하여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기자가 발행인 또는 편집책임자에게 우(右) 崔洛中으로부터 동요청이 있을 취지를 말하였거나 수사당국이 직접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에 대하여 여사한 요청을 할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하등의 소명이 없으니 동기사에 있어 발행인이나 편집책임자에게 하등의 고의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들어 발행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59. 6. 6. 서울고법특별 1부판결)

③ 1965년 12월 24일의 대구매일(大邱每日)신문에 대한 反共法 위반으로 인한 구속사건
이 사건은 간첩이 묻은 권총, 무전기등을 발견했다는 보도가 처간첩공작을 와해시켜 간첩체포를 모면케하여 복귀의 간첩활동을 이롭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大邱지법은 「기사표제에 이 사건이 보도될 경우 법인이 인지코 도주할 우려가 있어 情報部 및 현지 경찰에서 보도금지 요청이 있음」이라는 添記가 있는 것으로 주선(朱線)으로 삭제하여 이를 파기하고 기재케하여 보도케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당시 영덕경찰서 정보계장 黃철규가 東亞, 서울신문등 기자들에게 刑罰을 시켜 보도관제를 하게 했다는가 서울신문특파원 조덕근에게 영덕소재 「七七」 다방에서 보도관제를 해달라고 말했다는 등의 방법으로 보도관제를 했을 뿐이고 동수사계장이 경비정화로 경찰국에 간첩출현경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으나 동기사에 대한 보도관제요청의 충신의 계대

로 정보부 및 방첩대의 책임자로부터 서면 등의 형식으로 정식 보도관계
 제요청이 없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동사실을 영덕부근에서는
 이미 광범하게 알려진 사실등을 보면 동사건이 긴급하고 절박하게
 보도관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해 피고인들에 대한 無罪를 선고했다. (67.10.18 大邱지법형사부)
 이 판결은 재판부도 언론의 자유와 보도관제의 관계에 대해서 언
 론의 자유는 民主政治존립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 언론의 자유에
 의해서만 이상적인 국민전체의 의사가 형성되고 국가권력에 대한
 民權을 방어하고 비판과 사실보도로써 조국발전의 창의적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사회문제라는 것에서 보면 더구나
 대중적성격을 가진 신문언론을 담당 한 피고인들로서는 정식으로 보
 도관제요청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방첩대 및 公報장관의 公文과 같
 이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할 뿐 反共과
 보도가치를 비교해서 보도의 여부를 독단으로 수사담당자들
 의 보도관제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포제에 부기한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서는 본건의 여러가지 사항으로 보아 피고인
 들이 국가수사기관의 간첩체포공작을 방해하여 간첩을 도피시켜 적
 을 이롭게 하기 위한 所為라고 단정적으로 판명하기 어렵고 피고인
 들이 기재한 동기사로 인하여 결코 대간첩공작을 할 수 없었던
 절대적 위험성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
 결과의 害惡의 중대한 발생이 긴급하고 절박하여 이러한 언론의
 내용으로 구제될 수 없는 불가피한 因果관계가 없는 限 본건 所
 為가 反共을 國是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압할 위
 험감이 있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법항소부에 항소했으나 이를 기각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 두사건에서 우리는 정식으로 보도관제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것은 신중을 기할 주의할 뿐 反共과 보도
 가치를 비교 교량하여 그 보도의 여부를 독단으로 판단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利敵非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判
 示함으로써 사실상 보도관제의 속력을 부인했다. 매일 (每日) 신문
 의 경우 기소일부부터 무죄판결이 될때까지 거의 만 2년이 걸렸다.

문제는 재판의 유무죄보다는 현실적으로 2년을 옥중에서 시달리
 는 물리적 고통이다.

이른바 「軍機누설사건」 (東洋通信) 의 경우 결국 무죄가 확정되
 었지만 해당 기자들의 수사기관 심문 과정에서의 고통은 형용할
 수 없었다. 이 같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
 없는 「협조」나 「보도관제」요청에도 언론이 고개를 숙일 소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곧 국가안보에 대한 당국의 전횡이 일방
 적이며 주관적이라는 것을 제삼 나타내고 있음.

제 5 절 남북의 보도의 역이용도 (逆利用度)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한창이던 71년 11월 북괴의 제 1, 2 방송 및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대남방송가운데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및 통신을 역이용 보도한 것을 보면 총 1백 65건으로 나타났다.^(註1) 「미디어」별로 보면 신문 71건, 통신 15건, 방송 37건이다. 이기간중 북괴대남방송동향은 남한국민의 투쟁을 과장 선전하고 이를 선동하는데 주력했으며 정부의 정책비난과 韓美일간 韓日이간등 정책비난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현상은 10월중에 있었던 학원정상화 조치에 따라 학생 및 학부형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北傀가 인용한 내용은 대체적으로 ① 학원 탄압에 대한 반정부 투쟁선동 ② 도시 농어촌 저소득자의 임금투쟁 ③ 韓美日이간선전 ④ 정부의 정책비난이었다.

분야별로 보면정치가 30건으로 19% 경제 11건에 7% 사회 87건에 53%로 가장 많이 이용당했다. 조사는 13건에 4% 기타 22건에 13%로 나타났다.

가장많은 역이용도를 보인 것이 사회와 정치분야라는 점은 역시 북괴대남전략의 기본노선이 정치적 불안과 사회불안을 통한 현체제의 붕괴등을 선동조장해 인민혁명을 달성하겠다는 야욕을 그대로 입증했다고 하겠다.

영세소득자들의 임금투쟁과 생활난으로 인한 생활조건 개선투쟁을 유발시키려 했으며 정책비난으로 국정감사에 편승한 대정부 불신감정을 조성하려 했다고 분석된다.

특히 미군의 범죄를 과장하여 선전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지연이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는 상투적인 선전을 했다.

日本과의 경제협력이 또하나의 매국적 행위이며 군국주의자들의 한반도침략정책이라고 선전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메스콤」은 북괴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통신 북괴방송을 한건도 인용하거나 역용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공산국의 체제하에서의 언론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체제의 차이점도 있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언론정책이나 대외홍보전략의 빈약성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더우기 南韓의 각종 언론기관에서 北韓의 방송이나 간행물 신문 통신을 제때에 받아 볼수도 청취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자료의 제공도 받지 못하고 접근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南北赤十字회담이 열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북괴는 南韓의 정세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듯한 기미나 정세나 혹은 사건이 보도되면 주저없이 일관성있게 이를 역이용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사실은 통제사회의 특징이 기도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는 거의 없는 무방비 상태다. 북한은 각종 간행물의 역이용이란 이제까지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북괴는 서울서 발행되는 일간지는 물론 경기매일, 강원일보, 충청일보, 전북일보, 대구일보, 釜山일보, 중도일보, 전남매일 까지도 인용했다.

통신은 東洋時事 合同 同和를 방송은 서울중앙 동아 문화 기독교방송을 비롯 부산 대구 광주 강능 속초방송까지 청취 이중 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모조리 역이용하고 있다.

(자료별첨)

제 6 절 관계사건의 판례(判例)

한국에 있어서 공산주의에 관련된 신문의 보도가 어떤 경향으로 제재를 당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법적(法的)으로 문제가 되거왔던 중은사건을 추려 그 판례를 소개하면서 비판을 해보기로 한다.

① 「불꽃會」사건

64년 6월 22일 하오 10시 30분쯤 全南광주(光州)시 東明洞 1구 154의 11호 소재 全南大學校 대학원생 金동원(26)의 집에서 成均館大學校 동양철학과 4년 金승균(26)과 全南大學校 상학과 4년 金시현(26)의 안내로 동 4인이 회합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간 수개월동안 서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데모를 비롯한 시사, 정치 문제에 관한 토론이 교환되던 중 전시 金시현으로 부터 北韓괴뢰정권이 인민에 대하여 천리마(千里馬) 운동으로 가혹한 노동력을 부과하고 있는것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지 아니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同千里馬운동은 北韓괴뢰정권이 과분한 경제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동시간의 연장등의 수단으로 인간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있는 北傀의 정책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도기적인 혁명과정에 있어서 노동력을 그와같이 과도히 부과하는 것은 부방하며 그런 정도의 인권침해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反國家단체인 北傀정책과 활동을

찬양하여 이롭게 한것이라고 判示했다. (65.1.27 서울刑事지법)

② 세칭 대학생서어클「民族사회연구」(NSP)

被告人은 65년 3월말경 수차에 걸쳐서 피고인의 집 및 「라일구」다방 등지에서 피고인 정희택(鄭喜澤)에게 위시적등에 의한 공산주의 제도에 관하여 사회주의를 제도화하고 있는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역설하고 동년 4월 20일경 群山시에 있는 위 金중석의 집에서 同人 및 차영준등에게 中共의 毛沢東은 토굴생활을 하다가 금일의 중공을 건설한 사람으로 훌륭하고 명망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같은해 7월 21일경 위 「라일구」다방에서 휴가차 하행한 金석중에게 소련의 국력을 증진시켜 금일에 이르게 한것은 「스타린」이라는 취지로 그 政治力을 칭송하는 의미에서 被告人은 同人을 숭배한다고 말함으로써 국외의 共產계열의 活動을 찬양했다고 판시했다. (66년 3월 2일 서울형사지법)

③ 세칭 前文化방송사장 사건

被告人 황용주(黃龍珠)는 南北연방론 南北協議論등을 주장하고 유엔군의 韓國주둔을 「강대국의 자국경영에만 급급한 나머지 취해진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라는 등의 내용의 논설을 작성하여 세대(世代)지에 게재한 행위를 反國家단체의 活動을 고무동조하여 이롭게 한것이라고 判示했다. (65. 4 .30. 서울형사지법)

④ 被告人이 50년 5월경 내남간첩으로 같이 내려왔던 김모(金某)의 사상을 떠보기 위하여 67년 1월 6일경부터 10일경까지의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金某에게 朝鮮노동당의 조직원리 및 국내외 정세에 관한 교양을 실시하고 北韓은 정치 경제 사회면에서 南韓보다 월등하게 발전해 있을뿐 아니라 中立國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되지 않으면 위대한 영도력을 가진 金日成이 70년대에는 그의 생애의 과업인 南北統一 실력으로 쟁취할것 이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실사 떠보기 위한 것이라도 그 찬양동조하는 언행의 내용으로 보아 정상적인 정신을 가진 被告人에게는

北僞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고 적어도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 할 것이며 그와같은 사정은 범죄의 정상문제 내지 처벌가치의 크고 작고의 문제이지 고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判示했다. (67.12.26 大法院판결)

反共法 4 조 1 항에 대한 전기의 4 건의 판례의 시대성을 살피기 전에 찬양 고무 동조의 개념과 정의를 보자

찬양고무 동조라는 것은 前示한 바와같이 의식의 표현의 한 방법으로서 특정인 또는 不特定人에게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동조하거나 추앙 또는 숭배하는 표명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本罪에 있어서는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 또는 국외의 공산대열의 활동을 특정인 또한 不特定人에게 그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동경 추앙 또는 숭배를 표명할때 성립되는 것이다.

이때에 있어서 표명하는 행위로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며 타인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의견으로 원용하는한 자기의 의견에 포함되는 것은 더 말할것도 없다.

과거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등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보지(報知)가 이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반드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표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어떠한 경우에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의 직접 표명된 바에 의하여 사회의 통상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검토를 가함과 아울러 그 진제 또는 배경을 이른 사회적 사실중 일반에게 公知의 것으로 되어 있는 것과 나아가서는 무엇이 국가적 이익인가를 아울러 생각하여 판단치 않으면 안된다. (국가보안법, 반공법개설 246 P. 韓沃申)

고무에 관해 同調를 특정인 같은 불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여 상대방의 사기를 앙양케 하고 表明행위로 정외하고 찬양보다는 적극적인 강조의 의식의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同調로 단체의 구성원의 활동을 인식하고 반국가단체의 활동과 동일한 주장을 하거나 거기에 합치되는 어떠한 행위를 할때에 이를 同調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라서 반국가단체의 주장과 동일하다는 뚜렷한 인식이 있어야만 되는것이다.

同調 그자체는 「찬양」 「고무」보다 한층 앞단계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념구성은 더욱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단순히 반국가단체가 주장하는 바를 합치되는 행위에 대하여 가별성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결국 동조의 내용을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그행위의 동기가 반국가단체를 위한 것이냐 또는 국민의 민주주의 기본적행사냐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동조행위가 國法질서를 침해할 가능성 또는 개연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활용주(黃龍珠)의 세대(世代)지 필화사건은 바로 이 同調라는 데서 언론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의 주장을 보면 ①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이 민의에 反하고 국토양단의 현실타개를 위하여 南北韓의 적대관계를 조성하고 있는 조사적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과 南北연방론 ② 6.25 동란에서의 유엔군 개입을 경이적 조속개입 유엔군의 한국주둔은 강대국의 자국경영에 급급한 나머지 파해친 무자비한 역사적 필연의 결과며 ③ 南北韓 不可侵약속 준비축소 ④ 긴장해소를 위한 관계국협상개시와 해빙작업착수를 내세웠다.

黃씨의 주장이 최근은 미우리(說売)신문등 日本신문들과 金日成 회견기사에서 밝힌 金日成의 통일방안과 합치하고 있다.

그러나 南北韓 밀사의 상호방문실과 赤十字회담의 본격화는 근본적으로 평화통일의 기틀을 위한 것이라면 순수한 의미에서의 헌법 제18조가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행사라고 볼수도 있다 하겠다. 비상사태 이후 일간신문 및 북한(北韓) 안전보장(安全保障) 등 월간지에 실린 北僞의 외교노선 근수산업 병력동원제등의 소개는 시나친 北僞의 戰力과대평가로 오히려 한국민들에게 패배의식을 불어 일으켰다는 점에 유의한다면 과연 어떤 것이 저을 이롭게 했는지는 충분한 논쟁거리가 된다.

北傀의 平和통일공세가 해외에서 특히 日本등지에서 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만행들 불러 일으키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시점에서 黃씨와 같은 주장은 위법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

南侵야욕을 버리면 北傀와 平和통일 대화용의 있다는 백남익(白南翼) 공화당의장의 5월 8일(外信기자초청연설) 발언들 내외정세의 변화에 따른 對北傀자세 수정으로 풀이 될수도 있다.

金외무부장관의 3단계 통일방안이나 이제의의 설명에서 유엔에 들어와서 통일문제를 논의하자는 말은 유엔가입에 앞서 北傀가 취해야 할 선행조건이 있지만 어쨌든 65년들 전후한 냉전시대에서의 反共法적용 해석과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변화를 가져 왔다고 하겠다.

세칭 대학생씨들 「民族사회연구회」의 범죄사실은 毛沢東은 토굴 생활을 하다 금일의 中共을 건설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숭배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일자 경향신문의 「越盟공세의 사령탑」 「보구엔지암」의 기사는 「지압」의 성품과 전략가로서의 능력등을 악의없이 선의로 썼다고 하겠다.

大學生들이 毛沢東이를 높이 평한 것이나 「지압」의 전략가로서의 평가와는 달달마 없으며 「닉슨」中共방문을 전후한 毛의 기사는 한결같이 온후하고 신비스럽게 신문이 취급보도했다.

이러한 현상은 「NSP」사건의 판결이 현시점에선 범죄구성요건이 되긴 애매하고 불합리하다는 짐을 자명하고 있다.

⑤ 大邱毎日 필화사건

1955년 9월 13일자 동시 사실에 「학생들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 사실은 敵性감시위원단 축출시 위운동이 관개인 것처럼 의혹 모독하고 敵性감시위원단과 北傀를 이롭게 했다고 北傀가 이 사실은 인봉 발송했으므로 이적행위가 성립한다고 기소되었었다.

이에대해 1심인 大邱지법과 2심인 大邱고법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은 大法院에 상고했다.

大法院은 56년 5월 8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판결이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所論사실은 피고인이 적성감시위원단 축출 시위운동을 의혹 모독하거나 멸시할 목적으로 집필한 것이 아니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기 시위운동을 의혹모독하거나 멸시한 것이 아니며 단지 시위운동에 있어 전소한 학생을 동원치 말라는 건설적 의견의 제안이고 또 실혹 전기사실의 집필발표가

북괴집단 내지 적성감시위원단의 사기를 조장하여 그 목적사항의 실행을 방조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함에 있는바 원판결의 인용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판결의 전기확정사실을 인정함에 충분할 뿐아니라 전기사실의 취의가 상기 인정과 유사한 이상 괴뢰집단의 전기사실 입수여부는 확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이밖에 △68년 10월 22일 (사건 68度 1118 반공법위반 다방에서 북괴방송 우연히 정취)

△68년 9월 30일 (사건 68度 1065 반공법위반 북괴를 찬양한후 「그놈들 (1.21 침범공비)은 한놈도 놓쳐서는 안된다. 다 잡아 죽여야 한다. 불상사가 이이상 크지않아 다행이다 등의 두사건이 모두 무죄판결이 大法院에서 확정됐다.

이상의 몇가지 재판의 결과를 보면 현시점에서의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는 것보다는 신음보도에 관한 사건이 모두 무죄판결이 났다는데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자유의 보호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려는 사법부의 태도와 국가 권력우월주의에 빠져있는 검찰 및 수사기관의 관계법의 확대 임의 해석이 심하다는 결론을 낳고 있다.

보도관제나 협조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항의나 이의를 제기치 못하고 있는 한국언론의 입장은 反共을 國是로한 우리나라의 특수성과 地政學的인 상황이 빚은 불가피한 현실로 개념한 탓이라고 하겠다.

이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완전한 언론자유의 보장이 언론의 책임을 논할 수 있다는 원칙을 지버리고 [匪家]이역이라는 일방적인 명제로 일체의 반론을 봉쇄해 버리는 당국의 태도가 공산권 및 북한 문제보도에 대한 가장 큰 암이라는 판단은 무리가 아닐것 같다.

大邱每日신문의 필화사건이 北傀방송에 이용됐다해서 反共法위반이라 면 앞서 지적한 「南北韓의 相互보도역이용도」에서 밝힌것 처럼 反共法의 적용은 무한대로 확대될 수 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국가의 安保와 국민의 「알」 權利와의 대립에서 「알」 權利의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당국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쉽다.

재판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재판받기까지의 과정에서 골탕을 먹이므로써 피부적인 압박과 압력을 받는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적 변화에 민감한 당국이나 법관의 양식의 문제가 제삼 강조돼야겠다.

제 Ⅲ 장 다른 나라의 공산권 보도태도

우리한국과 마찬가지로 국토(國土)가 분단되어 있거나 또는 전쟁상태에 있는 나라가 지구상에는 몇개 있다. 아랍권(圈)에 둘러싸여 전국민이 총동원된 전시체제로 적대국에 임하고 있는 「이스라엘」 광대한 대륙을 공산주의자에게 빼앗기고 대만(台灣)으로 밀려나와 실지회복(失地回復)을 국가의 지상(至上)목표로 삼고 있는 자유중국 전쟁때문에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월남(越南)·동서(東西)로 국토가 분할되어 공산주의자들과 내결하고 있는 서독(西獨) 등은 각기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안보와 공산주의 타도라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다. 따라서 이러한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언론의 관계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아보기로 한다.

제 1 절 「이스라엘」의 경우

국토(國土)가 분단되지는 않았으나 주위를 포위하고 있는 많은 아랍국가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 못지 않게 국가안보문제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하는 지상과제(至上課題)가 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여자까지도 병역의무를 지고 있는 전시하(戰時下)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안보와 언론의 관계를 알아보기로 한다.

「이스라엘」에는 지금 25개의 신문(조건 23개 석간 2개)과 4백여종의 정기간행물(이 가운데 70개가 정부 간행물)이 있다. 이와같은 「이스라엘」의 「매스 미디어」는 아랍국가들의 반(反) 「이스라엘」정책을 소상히 보도 해설함으로써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가령 예를들면 적대국인 「이집트」의 「안와르·사타트」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사실을 크게 보도 「사타트」는 「모스크바」에서 소련지도자들과 군원분쟁을 어느선에서 타결했는지 기획기사로 분석하고 그 대책까지 제시한다.

「훗세인」 「요르단」왕이 「예루살렘」을 포기한 연방제안을 제안하자 「예루살렘·포스트」등 「이스라엘」신문들은 「사타트」 「이집트」대통령과 「훗세인」 「요르단」왕의 사진을 1면톱에 게재하고 아랍권의 반응까지 소개했다.

특히 「예루살렘·포스트」지는 「훗세인」의 연방제안이 「이스라엘」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까지 상세히 해설 국민의 안보관정립에 기여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대해 「이스라엘」의 언론이 취하고

있는 방향은 정부와 언론기관이 민주적이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굳게 밀착하고 있는 토대에서 울어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민들에게 적대국가인 아랍의 방송과 TV를 마음대로 청취하고 시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랍국가의 방송을 거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방송의 내용이 터무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軍)이 언론을 통제 또는 검열(檢閱)할 수 있는 법이 있다.

1945년에 제정 공포된 위임 국방령(The Mandatory Defence Regulation)이 곧 언론을 규제 하는 법령이다. 이 법에 따라 군검열당국은 다음 두가지 권한을 행사한다.

첫째 군검열당국은 일반명령이나 특별명령으로 「이스라엘」의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대중복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대해서는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둘째 군검열당국은 명령으로 어떤 종류의 발간물의 경영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에게 인쇄 및 발행하고자 하는 일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인쇄시설을 갖춘 경영자뿐만 아니라 어떤 작품의 작가에게까지 자료를 제출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 군검열당국은 보유하고 있다.

단약 군당국의 검열지시를 위반했을 경우 해당 언론기관은 형법과 명예훼손법(65년공포) 등에 의해 재판을 받게되며 본안판결까지 인쇄시설의 몰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군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금지된 내용의 발간물을 발행했을 때 이같은 조치가 취해 지는 것으로 사방이 적국인 아랍권으로 포위된 「이스라엘」의 특수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군검열당국은 또 일정기간동안 지시사항을 위반한 언론기관에게 발행중지도 명령할 수 있다.

비록 군대가 신문검열제를 장악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군사기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검열권이 행사된다고는 하지만 「국가기밀」을 포함한 정치 및 경제기사 역시 검열의 대상이 된다. 군의 검열과(The Office of the Censor)가 이렇게 권한을 확대시키고 있는데도 「이스라엘」민주주의가 큰 위협을 받거나 또는 「이스라엘」이 독재국가로 평가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다음 두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신문기자와 일반대중이 신문검열이라는 공식절차가 「이스라엘」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기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검열절차가 될 수 있는 한 민주주의와 모순되지 않도록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은 일간지 「마아리브」(Ma-ariv)지의 편집인이며 「이스라엘」편집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아리에-디센트쉬크」는 「이스라엘」일간신문의 편집인들은 기밀사항을 보도할것인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검열제도를 더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신문검열제도는 가능한 한 비공식적이고 비권위주의적인 것으로 배려되어 있다.

기밀정보는 정기적인 오프·더·레코드「브리핑」을 통해 편집인에게 알려진다. 기밀사항을 다룬 기사는 자발적으로 검열관에게 제출된다. 검열체제를 보면 검열관은 답판 이의(異議)계기를 받아들여야 하는등 면접(面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검열제는 광범하게 적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검열과는 「이스라엘」방위군(IDF)군사정보국의 지휘아래 있다.

그러나 육군대령으로 보임되는 검열과장은 국방상에 의해 임명된다. 검열사무소는 「텔아비브」 「예루살렘」 및 「하이파」에 자리잡고 있다. 검열관의 약 40%는 현역육군장교이며 나머지 60%는 예비역장교인 민간인들이다. 모든 검열관은 각기 훌륭한 일반교육을 받았으며 기술문제에 관한 지식 및 몇몇 외국어에도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검열규정에 의하면 그 어느것도 검열관의 사전승인없이 발행될 수 없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49년 12월 12일 군과 「이스라엘」편집인 위원회간의 신사협정에 의해 일간신문을 위해 개정되었다.

그후 군과 언론과의 마찰을 없애고 협조하기 위해 1951년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했는데 이것이 신문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3인위원회이다. 신문협회와 군참모총장은 「이스라엘」국가안보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보도관제의 엄격성을 완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합의에 따라 군에서 1명, 언론계에서 1명, 학계나 법조계등 일반에서 1명 도합 3명으로 위원회를 구성 1군과 언론간의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군의 검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3인위는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지만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군당국이 준수토록 불문률(不文律)로 되어 있다.

협정당사자인 「미디어」의 언론인들에게는 검열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대상의 새일람표가 정기적으로 제공된다. 일반자료가 제출되면 검열관은 이를 승인할수도 있고 삭제할수도 있으며 전적으로

보도를 금지시킬수도 있는가 하면 좀더 검토하기위해 승인을 연기할수도 있다. 검열관의 결정이 못마땅한 편집인은 직접 검열과장이나 차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이견(異見)은 이런 방식으로 해소된다.

3인위이외에 편집인과 군부간의 협정당사자로서 검열고등재정소(檢閱高等裁定所 High Court of Censorship)가 편집인들의 이의를 계속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다. 검열과장 역시 검열규정을 위반한 신문에 대한 소송을 고등재정소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는 시간적으로 생명이 짧은 까닭에 이의가 제출된뒤 48시간 이내에 재정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안된다.

고등재정소가 의견불일치로 결정을 못내리면 군참모총장이 그 결정에 개입하는 수도 있으나 이런 사태는 지난 20년동안 오직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10년동안 재정소에 제출된 사건은 불과 1백여건에 지나지 않으며 이중 약 90%는 군의 승리로 귀결됐다. 검열관이 신문에 대한 소송을 제출한 경우 고등재정소는 판결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발행을 정지시킬수 있다. 벌금은 보통 30달러에서 3백달러사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벌금액수가 이보다 훨씬 많은 수도 있다.

발행정지의 경우에는 일수(日數)의 상한이 없다. 그렇지만 지난 20년동안 검열위반에 대한 처분으로 신문발행이 정지된 일은 세번밖에 없었으며 어느 경우에도 사흘을 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신문검열은 분명히 기밀사항을 다루는 보도자료에 대한 실제조사외에도 3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목적은 ① 개별적인 자체검열의 전통을 강화 유지하고 ② 외국특파원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안녕(安寧)에 관련돼 있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③ 잠재적인 적국에 「이스라엘」을 해치는데 이용될 수 있는 모종의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는 것 등이다.

군사기밀에 관련된 경우 국민각자의 자체검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캠페인」이 모든 계층의 「이스라엘」국민을 향해 벌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장병들은 자신의 직책이나 무기나 기지(基地)의 위치등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분산되어 있다.

언론자유에 대한 행정적 제한조치는 1933년 영국통치자에 의해 선포된 「언론포고령」(Press Ordinance)에 의해 아직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나 「언론포고령」에 의한 제재조치는 없다. 이 포고령하에서 신문을 발행할수 있는 권한은 지방행정관서의 허가를 경영자가 획득함으로써 이뤄졌었다. 이 허가는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이뤄지며 편집인은 포고령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해야 했다.

언론포고령이 선포됐을 때 내상(內相)은 공황(恐慌)을 야기할 허위보도나 사실을 왜곡하거나 또 평화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 보도에 대해 신문의 경영자와 편집인에게 1차로 경고했다.

만약 이 경고가 무시되면 내무성(內務省)의 견해가 언론에 의해 북살됐다고 간주 1발행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엔 내상이 경고도 발하지 않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기간동안 신문의 발행을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언론포고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회는 1965년 5차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명예훼손법」(Defamation Law)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인의 이익과 공인(公人)사이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훼손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민주제도의 기본원칙인 언론자유를 보장하며 언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고 언론이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가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 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신문사의 발행인과 편집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조문이 있어 언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야당소속의원들은 65년 9월 1일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매체(媒体)수준에서의 공식적인 검열제는 주로 자발적인 검열제를 강화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아라 모든 나라중에서도 「이스라엘」은 편집인들이 선검열과정의 비공식적인 협조자가 돼있는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신문을 가진 유일한 나라라 할 수 있다.

편집인들은 후에라도 보류해둘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히 많은 비밀정보에 암암리에 접하고 있다. 국방상과 군감모총장은 주필과 제한된 범위의 기자들을 위해 매달 기밀사항에 대해 오프·더·레코드로 브리핑을 한다.

미국 및 유럽계 통보도기관의 특파원에 대한 규제는 「이스라엘」 보도기관에 근무하는 기자들 보다 훨씬 엄격하다.

해외송고용 기사는 무엇이든 검열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파원들은 검열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는 유일한 이의 제기는 정규민간법원에 대해서만 하게 되고 그것은 흔히 시간문제 때문에 비현실적인 방법이 되기가 예사인 것이다.

군은 외국 특파원들에게 호의(好意)를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스라엘」안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인상깊게 하려고 하고 있다. 검열관은 홍보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검열과는 군대내의 모든 다른 부대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동원된

예비역을 배치함으로써 확대된다. 그렇지만 1967년 「6일전쟁」 중에는 수백명의 기자들이 신속하게 기사를 송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검열을 완화했었다.

국방성내변인은 매주 외국의 특파원에게 오프·더·레코드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가치가 있는 사건이 발생하면 군연락장교들이 특파원들에게 알리고 흔히 기밀지역에 들어가는 차량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기자들의 활동이 군연락장교 및 검열관과 관련을 맺고 있어 특파원들은 「이스라엘」군에 대해 보통 호감을 갖게되며 어떤 정보가 해외로 전달되면 왜 안되는가 하는 이유를 이해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검열제의 심리적인 목표는 적국(아랍권)에 「출처가 확실한 기사」를 국제정치적 압력에 이용할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의 원유공급원(原油供給源)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갈 선적은 공급국이 공표하지 않으며 또한 수입되는 원유의 출처나 양은 「이스라엘」에서 공포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취재된 이 문제에 대한 기사들은 「정확한 출처」를 결여하고 있는셈이며 따라서 아랍권은 공급국에 대해 「이스라엘」과의 석유무역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을 길이 없다.

그렇다고 검열관과 국내 및 국외신문단체와의 관계에 마찰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신문기자들의 불만은 어떤 검열관은 다른 검열관보다 더 엄격하다는 등 여러가지이다. 그러나 외국특파원들은 검열제도가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한 「선전검열(Propaganda Censorship)」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민주주의의 본질과 확대일로에 있는 국제적 「콤포지션」 때문에 「이스라엘」이 훨씬 더 계약적인 검열규정을 부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만큼 「이스라엘」검열관이 보다 진보적이 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그러나 군당국은 신문측에 기밀정보를 더적게 알려주고 기자들이 기밀정보의 인적, 물적, 출처에 접근하기가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이를 보완하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신문은 검열제아래서도 군과 협조 「이스라엘」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있고 대국민매개체로서 국가관을 부식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 2 절 자유중국의 경우

자유중국(自由中國)에서는 31개의 일간지가 80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중공(中共)에 관한 뉴스는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차이나·포스트」 「차이나·뉴스」 「엑스프레스·뉴스」등 3개 영자(英字)신문은 중국어(中國語)신문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하나 중공에 대한 보도는 묵살되거나 경시되고 있다. 「닉슨」미국 대통령이 72년 2월 21일 역사적인 중공방문을 했을 때 자유중국 신문들은 사실만 간단히 보도했을 뿐 모택동(毛澤東) 주은래(周恩來) 섭검영(葉劍英)등과 회담하는 「닉슨」대통령의 사진등은 일체 게재하지 않았다. 자유중국의 신문은 철두철미 반공(反共) 일변도로서 모택동을 중공당주석이란 표현보다는 홍비(紅匪) 모택동이라 표기하고 있다.

특히 중앙일보(中央日報) 신생보(新生報) 중화일보(中華日報) 징신신문(徵信新聞)등 유력지는 중공의 내부사정이나 중공지도자들의 동정에 대해서는 「타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모택동이 「하일레·셀라시예」 「이디오피아」 황제나 「루메이니아」 국가평의회 의장 「니콜라에·초세스쿠」와 접견한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자유중국은 헌법(憲法)에 언론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또 기타 법률로써 언론자유를 규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아직도 제엄령하에 있기때문에 자유중국의 신문은 중공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보도하기가 껴 어렵다. 다만 중공내부의 거두운면 특히 중공지도층의 내분등은 소상히 보도할때가 있다. 대약진운동(大躍進運動)에 의한 인민공사(人民公社)분제·문화혁명에 의한 중공의 권력구조분제 나아가 국가주석 유소기(劉小奇) 당총서기 등소평(鄧小平)등의 실각등은 자세히 보도했는데 그「소스」는 「홍콩」에서 발간되는 반공신문을 인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 4월 29일 「홍콩」의 반공신문 래보(叻報)지는 「숙정당 한 중공의 전국방상 임표(林彪)는 공군에게 월맹(越盟)으로 가는 수상 주은래(周恩來)의 비행기를 격추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주은래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전제한 자유중국신문들은 「크레디트」를 「홍콩」으로 보도했다.

자유중국의 신문은 정부의 신문국(新聞局)이 「콘트롤」하고 있다. CNA(중앙통신)는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체코」의 자유화운동이 소련「탱크」의 「프라하」진입으로 좌절됐다거나 「유고」와 「루메이니아」가 자유화의 길을 걷

고 있다등 동구권(東歐圈)에 대한 보도는 소상히 해설까지 첨부해서 보도하고 있다.

「닉슨」미대통령의 북경(北京)방문과 상해(上海)공동성명 이후 미·중공간의 협조「무드」에 발맞추어 자유중국신문들은 소련문제에 비중을 두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유중국은 소련과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고 외신은 보도했는데 자유중국신문은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이 소련외상 「그로미코」의 방일(訪日)을 크게 다뤘고 사토(佐藤) - 「그로미코」회담기사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일반적으로 자유중국신문은 중·소(中·蘇)이념분쟁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내면서 「우수리」장에서 중·소양군대가 무력충돌한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 소련이 「바르샤바」조약동맹군을 철수시켜 소·만(蘇滿)국경에 배치한 사실이라든지 「닉슨」의 중공방문 이래 소련과 월맹(越盟)이 접근한 사실을 신문이 대서특필하고 있다.

특히 월맹군의 무기중 85%가 소련제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단적으로 중공을 제외한 공산권에 대해선 별다른 보도상의 세약이 크게 없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국제기구인 유엔과 그 산하기구에서 공산국이나 중립국 일부서방국가가 중공을 가입시키고 자유중국을 축출하자는 발언등은 엄격히 통제 보도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반면 「카나다」가 자유중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키로 했다는 보도는 간단히 그 사실만 보도하여 왔다. 말하자면 중공이 외교공세를 취하는 그 사실을 전적으로 묵살하지는 않고 있다. 경우에 따라 중공의 인민일보(人民日報)기사도 인용하는데 그범주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월맹인민은 월남의 유국인민들을 지원할 권리가 있다. 「베트남」은 단일국가이며 따라서 이 단일국가의 어느 한쪽에서 다른쪽에 대해 전투를 개시했다면 그것은 침략이라고 표현될 수 없다. 중공인민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것 등이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日本)에 대해 자유중국신문은 지면을 많이 활애하고 있다. 중공에 대한 사토(佐藤)수상과 후쿠다(福田)외상, 다나카(田中)통산상등의 발언을 다루고 있으며 미끼(三木)전외상이나 후지야마(藤山)전외상등의 중공방문도 간단히 보도하고 있다. 그외에 중공의 왕국권(王國權)이 일본에 들른 사실도 보도한다.

특히 일화(日華)조약에 대한 일본정부지도층의 발언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소위 주은래 4원칙(四原則)에 대한 강력한 반응을 제기하고 있다.

자유중국신문은 중공을 공비(共匪)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임포(林杓)의 하부세력인 유흥원(劉興元)을 체포 출당했다고 보도할때 광주임계비군두목(廣州林系匪軍頭目) 유비흥원피출(劉匪興元被出)이라고 쓰고 있다. 말하자면 중공지도층의 이름엔 비(匪)자가 붙으며 중공을 공비(共匪)라고 표현 철저한, 반공색채를 띄고 있다.

중공군은 비군(匪軍)이라 표현되며 월맹은 북월(北越)로 쓰고 있다. 중공에 대한 보도에 통제와 보조를 같이해 세계반공연맹(WACL) 아시아반공연맹(APACL)등 반공단체의 활동상황은 소상히 보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곡정강(谷正綱)씨의 활동상은 1면에 3·4단으로 보도하고 있다.

자유중국신문들은 신문국의 협조요구에 순응하고 있다. 소련의 기자이며 막후접촉인물인 「루이스·빅터」가 비밀리에 대북(台北)을 방문 정부의 관리와 접촉한 사실이 있으나 지상엔 그가 입국한 사실도 비치지 않았다. 그만큼 자유중국신문은 정부의 보도관계에 순응하고 있다.

언론계는 안전보장과 국가이익이라는 두가지 차원에서 정부의 지시에 순응하고 있는데 신문국과 언론계간의 정기적 회합은 보편타당성이 있는 공통분모를 모색하는 작업이지만 사실상 보도의 계약을 논의하고 있다.

자유중국의 형법과 언론관계특별법은 언론자유를 남용하는것을 규제하고 언론매개체를 탄압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를 고무 찬양했거나 선전을 하면 제엄법에 따라 영장없이 체포되어 투옥된다.

70년 9월 7일 「필립핀」의 「마닐라」에서 화교(華僑) 언론인인 「퀸·틴·유이통」 「리잘·유이통」 형제가 신문지상을 통해 공산주의를 선전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2년실형을 받고 수감되어 있다. 군재에서 2년형을 「유이통」형제가 받았는데 재판과정을 보면 증인신문도 용납안됐고 사실심리가 끝난지 3시간만에 구형이 내리는 실정이었다.

IPI(국제신문협회)는 수차에 걸쳐 이는 유엔인권선언에 위배되며 군재가 재판관 할권이 없다고 진정, 관대한 처분을 호소하고 있으나 별효과가 없다.

외국 간행물(신문, 잡지)에 대한 검열은 철저하다. 특히 일본신문과 잡지는 중공「붉」으로 중공특집이 많아 판매금지조치가 빈번히 단행되고 있다. 자유중국신문국은 일본의 신문이 북경(北京)에 특파원을 상 주시킴을 위해 중공측이 요구한 정치 3원칙

(政治3原則)을 준수키로 한것으로 믿고 있다.

정치 3 원칙이란 ① 중공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② 2개의 중국(中國) 음모에 가담하지 않는다. ③ 일·중공(日·中共)의 국교회복을 방해하지 않는것 등이다.

64년 9월 북경에 특파원을 보낸 일본의 언론기관은 NHK(일본방송협회) 민간방송인 TBS(동경방송국) 조일(朝日) 독매(読賣) 매일(毎日) 산경(産経) 일본경제(日本經濟) 서일본(西日本)등 이었다.

자유중국신문국은 일본의 「매스콤」이 편파적이고 보도의 형평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신문은 물론 세계(世界)週報)등 주간지와 중앙공론(中央公論)등 월간지등에 판금조치가 단행되어 왔다. 69년도 AP통신 연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제적 잡지에 실린 공산주의에 관한 기사는 검열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공의 모택동이나 주은래가 「카버」로 된 미국의 「타임」이나 「뉴스위크」는 「홍비」(紅匪)라는 검열당국의 도장이 찍혀 시판되거나 기사내용을 삭제할때가 있으며 심한 경우엔 판금조치된 일도 있다.

자유중국은 정보기관을 제외하고는 일절 중공의 방송을 청취하거나 TV를 시청할 수 없다. 이는 제엄법이나 기타 특별법으로 엄밀히 제한되며 중공내부사정은 CNA통신이 서비스한 내용밖에 알수 없는 상태이다.

자유중국의 방송국총출력은 6백 32킬로와트(KW)로 최대방송망을 갖고 있는 중국방송국(BOC)은 대북(台北)에 본국을 두고 1주에 2천 6백 90시간방송을 행하고 있다. 국제방송인 「자유중국의 소리」는 미국·아시아 각 지역역에 영어, 불어, 한국어, 일어, 인니어(印尼語), 월남어(越南語)등 6개 외국어와 표준중국어, 광둥(廣東), 하문(廈門), 조주(潮州), 객가(客家), 서장(西藏)등 6가지 국내어로 방송하고 있다.

그외에도 중국대륙에 대하여 「희망의 소리」방송과 노어(露語)로 특별방송을 보내기도 한다. 중국대륙에 대한 방송과 각종전단의 살포는 국민당(國民黨)의 대륙공작조(大陸工作組)와 심리작전조(心理作戰組)에서 담당 치열한 공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자유중국은 해외홍보전략에 있어 1천 6백만명에 달하는 화교를 적극 참여 시키고 있다. 국민당의 해외공작조(海外工作組)가 화교분계를 취급하는 곳이되어 있는데 화교들을 자유중국의 P·R요원으로 우대하고 있다.

해외화교들에게 본국초청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대만에 돌아온 학생들에게 장학금, 보조금, 의약비, 여비등을 주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준다. 과거 10년간 8천명의 학생이 해외 40개국에서 조국으로 돌아와 교육을 받았으며 1965년 6월 1천 3백 35명의 화교 학생이 9개대학에서 각각 학업을 이수했다. 8천명의 학생중 6천 3백여명이 대학생이고 1천 2백여명이 중·고등학교 학생이다.

1951년 불과 1백 3명만이 고국에 돌아왔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것은 조국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 홍보정책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책은 1951년부터 56년까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화교들이 중공의 회유에 현혹되어 중공에 건너갔다가 사회주의체제를 몸소 체험하고 실망과 좌절감에 사로 잡히게 되어 만들어졌다.

화교의 분포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 1천 5백 86만명 북남미(北南美)에 44만 2천명, 유럽 2만 6백명, 대양주(大洋洲) 4만 9천 5백명 「아프리카」에 4만 3천명이며 각국별로는 「말레이시아」 3백 89만명을 필두로 태국(泰國) 3백 79만 9천명, 홍콩 3백 19만 8천명, 인도네시아 2백 54만 5천명, 월남(越南) 1백 3만 5천명, 「버마」 42만명, 「캄보디아」 26만명, 「필리핀」 15만 2천명, 「라오스」에 2만 4천명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 보조를 맞춰 신문은 해외화교의 활동을 소상하게 보도하며 조국을 방문한 해외화교대표들의 기사는 크게 취급한다.

1972년 4월 7일자 연합보(聯合報)는 「필리핀」 화교상업이사장 채문화(蔡文華)가 엄가감(嚴家淦) 행정원장을 방문한 사실을 중간「톱」기사로 취급하고 사진을 3단으로 게재했는데 단순한 동정기사를 이렇게 대서특필한 것만 보아도 자유중국신문이 얼마나 해외화교에 비중을 두는가를 알 수 있다.

중공의 유엔가입후 「뉴욕」에서 친중공계 화교와 친자유중국계 화교간에 난투극이 있은후 자유중국은 특히 해외교포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라는 정기간행물을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에게 배부하기 시작했고 「대만」(台灣)이라는 영문판책자를 발행 대만의 발전상을 널리 소개하고 있다.

또 중국대륙재포구제총회(中國大陸災胞救濟總會)명의로 「우리는 모택동을 고발한다」(我控訴毛沢東)는 선전책자를 국민당해외공작조는 공비임포사건(共匪林彪事件)을 국민당 중앙위원회 제4조는 「역사적 교훈」이라는 발간물을 각각 해외에 배부·치열한 대

중공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대만에서 공산주의에 관한 기사는 철저히 검열되지만 대만 상주 해외특파원들의 송고는 검열을 받지않고 있다. 비교적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해외특파원에 대한 이러한 온건한 정책은 국제여론의 광범한 지지를 얻으려는 정책의 소산으로 보여진다.

제 3 절 월남의 경우

공산월맹(越盟) 및 베트콩(민족해방전선)과 전쟁을 하고 있는 월남(越南)은 전시하에 있기때문에 모든 「매스콤」이 공산주의나 정치적인 중립을 표방할 수 없으며 정부조치에 순응토록 압박화 되어 있다.

월남헌법(憲法) 제 13 조는 「신문과 출판물의 간행은 국가안보에 저촉되지 않는한 아무런 검열도 받지 않는다」고 언론통제를 규정하고 있다.

또 1969년 12월 30일 월남상하양원(上下兩院)을 통과 「티우」 대통령이 서명한 언론규제법(Press Law)은 헌법 13조에 근거하여 언론이 공산주의를 선전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표명하지 못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69년 언론규제법이 제정되기까지 월남정부는 계엄령에 의거 신문을 정간시킨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1968년 월남공보성은 당시 수상인 「후응」씨(현부통령)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투도」 「도이·수·미엔·남」 「송·모이」 「티엔·노이·단·톡」등 5개지를 정간(停刊)시켰고 같은해 12월 두개의 신문을 정간시켜 14개 신문사에 정간명령을 내렸다. 언론규제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간은 폐지됐으나 월남정부는 엄격한 검열을 실시 신문의 압수가 다반사가 되고 있다.

1972년 5월현재 압수된 신문의 현황을 본다면 「동·나이」지는 「꽝찌」시 철군을 둘러싼 기사를 게재했는데 언론규제법 28조 위반으로 신문이 압수됐다. 이법 28조는 「보도는 사실무근인 뉴스나 논조를 배포할 목적 혹은 사실이라도 아래와 같은 작용을 일으킬 의도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 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저해 하는것
- ② 국가재정 경제를 위협하는 것
- ③ 군대의 감투정신과 군기를 문란케 하는 것

④ 종교, 지방, 소수민족을 이간시키는 것

월남공보성은 언론규제법 28조에 의해 압수조치를 단행하고 있는데 「북탄」지는 「호랑이 이빨 쭈시기」 「자이·둥」지는 「조이」장군에게 긴급명령을 내린자는 누구냐 「단」지는 「국민에 대한 책임」 「송탄」지는 「뚜께우」등의 기사를 게재 정부를 비방했다고 당일 발행된 신문은 모두 압수를 당했다. 당국의 압수이유는 언론규제법 28조에 규정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를 저해했으며 군의 감투정신과 군기를 문란케한 혐의라는 것이다.

「캅·티엔」지는 사진으로 「꽁찌」시의 「트야티엔」전선의 공산월맹군의 모습을 보도했는데 공보성당국은 언론규제법 제29조에 의해 신문을 압수했다. 이법제29조는 공산주의나 친공중립주의(親共中立主義)의 이론 정책 및 행동을 고무 찬양하는 것을 목적으로한 정보 문서 및 논의에 대해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은 월맹지도층인 노동당 제1서기 「레·두안」 수상 「꽁·반·동」 국방상 「보·구엔·지얏」등의 사진을 게재할수가 없으며 「하노이」발 기사를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군기의 폭격으로 인한 「하노이」와 「하이퐁」에 대한 외신(주로 AFP)의 「스캐치」기사는 게재를 허용하고 있다.

외신이라도 월맹지도층의 발언이나 월남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기사는 엄격히 통제 기사화되지 않고 있다.

「틴·솜」지는 피의 「꽁찌」시철군을 둘러싼 비화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공보성당국은 언론규제법 35조를 내세워 압수조치했다.

이법 35조는 「신문은 전통있는 도덕을 해치는 기사, 사진 및 그림등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틴·솜」지는 이를 위배 전쟁의 잔학성을 지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것이다.

「아시아」신문재단독자연구조사센터에 의하면 월남은 중국어신문 10개 「베트남」어 신문 15개, 불어신문 2개, 영어신문 2개등 포함 29개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언론규제법이 공포된 후 공보성신문국은 이와같이 매일 위법 기사를 색출 법에 의해 조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신문은 발행후 판매개시 6시간전에 신문국에 12부를 송달하며 송달된 신문은 신문국에 의하여 1차 검독(檢読)되고 신문규제법에 위반되는 기사가 1건이라도 게재되었을때는 1일발행분을 전부 압수하며 벌금형 내지 의법조치하고 있다.

1972년 4월 월맹군이 DMZ(비무장지대)를 넘어 「꽁트리」시를 점령하는등 내공세를 취한후 불확실하고 근거없는 군사전황

을 게재하는 신문을 압수하는 빈도가 잦아 1일 평균 29개일간지(2개 신문은 자진 폐간)중 7개신문이 압수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언론규제법은 총 8장 69 조로 되어있는데 1장=총칙(2개조항) 2장=신문발행조건(15개조항) 3장=신문의 권한과 책임(18개조항) 4장=신문배포(3개조항) 5장=신문위원회(3개조항) 6장=형벌(8개조항) 7장=소송절차(17개조항) 8장=일반조항(3개조항)등으로 되어 있다.

언론규제법 이외에 월남정부는 1972년 5월 4일 전공무원은 자체 경비를 포함한 24시간 철야근무 및 휴가취소 나아가 여행시는 필히 무기를 휴대하는등 비상근무체제로 임하는 요지의 비상령(非常令)을 선포 신문은 더한층 위축됐다.

「구옌·반·티우」대통령 명의로 선포된 이 비상령은 「민간인을 포함한 군인들의 약탈행위는 현장을 목격하는 즉시 총살하라」는 업명을 내리면서 「꽝트리」시의 함락이후 월남전에 대한 보안(保安)조치를 한층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비상령이 선포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언론규제법 32조와 33조에 규정된 ① 대통령 및 부통령 ② 월남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국가의 국가원수 대사, 공사 및 영사 ③ 입법(立法), 행정(行政) 사법(司法)부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단체 ④ 국회의원, 대법원판사 ⑤ 전사자(戰死者)의 명성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등에 대해, 「모욕」할수도 없고 「비방」할수 없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신문은 정부 발표문 이외에는 독자적인 취재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 월남신문은 외신에 보도된 기사도 다음대로 게재하지 못하고 있다. UPI 통신은 1972년 5월 4일 「제네바」발 기사로 「「티우」대통령 부인이 17세의 딸을 데리고 「스위스」의 한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을 만나보기 위해 「스위스」에 와있다. 「티우」대통령은 가족들을 「스위스」로 보낸것 같다고 보도했는데 이런 외신은 언론규제법 32조, 33조가 규정한 대통령을 비방내지 모욕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라 전제할 수가 없다.

「헨리·A·키신저」미 대통령안보담당 특별보좌관이 「파리」에서 월맹 노동당 정치국원 「레·득-토」와 비밀협상을 하자 「파리」와 「워싱턴」에선 연정(聯政)이 수립됨과 동시에 「티우」대통령은 「파리」로 망명할 것이라고 크게 보도했는데 이런 외신 역시 월남신문은 보도하지 못했다.

「하노이」방송도 월남에서는 정보기관을 제외하고는 청취할 수

없다. 이것 역시 언론규제법 29조에 「공산주의나 친공중립주의의 행동을 고무·찬양하는것을 목적으로 한 선전을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베트콩」비밀방송은 1972년 5월 5일 「월맹군이 점령한 북부월남 「꽁트리」성도(省都) 「꽁트리」시에 「인민과도혁명위원회」(人民過渡革命委員會)가 수립됐다」고 보도했고 「하노이」방송도 같은날 「꽁트리」성이 완전 해방되었다고 보도했는데 이같은 방송은 물론 청취할 수도 없고 신문에 보도할 수도 없다.

그러나 월남정부는 외국기자들의 활동에는 검열없이 송고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월남의 언론통제기구를 보면 위법여부는 공보성이 결정하지만 신문의 압수는 내무성(內務省)에서 담당한다. 지방지(地方紙)의 경우는 시장(市長)이나 성장(省長)이 직접 압수를 명할수 있다(언론규제법 19조) 그러나 신문이 압수됐다 하더라도 다음 날 신문은 발행할 권리를 신문사가 보유한다.

만일 신문을 압수한 정부의 조치가 법원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신문사의 발행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0조) 신문사에 지불되는 손해배상금은 국가예산으로 충당토록 되어 있다.

월남의 언론규제법은 「비방」을 소상히 규정했는데 이법 30조에는 「개인이나 기관 혹은 단체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는 사건 혹은 행위에 대해 암시하던가 기술했던가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은 모두 비방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조항은 ① 개인의 생활에 연관된 사건 ② 1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 ③ 범죄가 사면됐거나 형집행이 복권(復權)이나 파기(破棄)로 말소된것등은 절대 인증이 금지되어 있다.

언론규제법과 전쟁의 분위기 때문에 월남에 있어서의 정부와 언론의 관계는 철저한 종속(從屬)관계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언론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1972년 5월 10일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계엄령으로 월남에서는 사실상 군(軍)에 의한 검열제도가 부활되었다. 이 계엄령은 ① 모든 식량배급을 정부에서 통제한다. ② 모든 파업행위를 불법화 하고 데모를 금한다. ③ 주야를 막론하고 경찰관의 무제한 가택수색을 허용한다. ④ 병역 징집최고연령을 현행 33세까지를 43세까지로 인상한다. ⑤ 모든 관립 및 사립대학교를 임시 폐교한다. ⑥ 모든 국민의 주거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징집해당장정의 해외여행을 금한다. ⑦ 일반시민의 무기사용과 소지불금한다. ⑧ 영화관, 식당, 주점 및 호텔등 유흥입소 출입에 대한 추가세

(追加稅)를 징수한다. 9) 「사이곤」의 야간통행금지 시간은 하오 11시부터이던것이 하오 10시부터로 하는것등이 그 골자이다.

월남의회는 「티우」대통령의 계엄명선포에 따른 비상대권(非常大權)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를 심의했을 때 신문은 의회토의를 그대로 보도하거나 녹음등으로 재현할 수 없었다.

언론규제법 23 조는 국가안보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토론내용을 그대로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제 4 절 서독(西獨)의 경우

I. 정치적 배경

1956년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공산당(V.D.D)이 기본법 제 21 조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불법정치단체라고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과의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대화는 「아데나워」정권이래 추진 계속해 왔다.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극도로 대립한 50년대에서 6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 대립속에서도 이산가족(離散家族)의 교류를 비롯 항상 동독과의 접촉관계가 끊어지지않았다.

국내적으로는 공산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해 왔으면서도 대동독(對東獨)과의 전략적차원에서는 언제나 그들의 움직임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루트를 전면 봉쇄하지 않았고 인사(人士)통행 우편관계와 더불어 사회, 문화교류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61년 「베르린」장벽이 구축된이래 동·서간 대립은 절정에 달했던것이지만 그런속에서도 서독연방정부는 대동독민 거래를 소홀히 한적이 없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사례는 1963년 12월 당시 서「베르린」시장으로 있던 「빌리브란트」가 그의 자문관인 「에곤 바르」(Egon Bahr)를 통해 접근을 통한 체제의 변화라는 이름아래 동서「베르린」간 통행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을 벌이도록 노력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가 하면 당시 동독내각위원회의 부의장 「아부 쉬」도 「바르」와의 수차에 걸친 서신왕래가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64년 8 월에는 동독이 양독간접촉을 위한 연방국(聯邦局) 설치에 관심이 있다는 서독의 「프랑크푸르트 룬드샤우」지가 보도해서 당시 자민당(自民黨 F.B.D)당수이자 통독성장관이던 「멘데」(Mende)가 서신거래 운수 무역등에 걸쳐 동독당국과 접촉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게 했다. 그리고 한달후인 9월에는 정

당간 접촉이 아니라 정부간 비공식접촉으로서 당시 동독수상 「슈토프」(Stoph)가 인민회의에서 「아메나워」수상이 보냈다는 특사와 이미 62년에 서독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해 동독의회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또 「에르하르트」집권시에는 서독노동총명예회장 「아물센」(Hans Constantin Panlssen)이 수상과 양독간의 조정기관에 관한 비밀회담이 있었다.

66년 2월에는 동독공산당(SPD)이 서독노동당(SPD)에게 공개서한을 보내고 양당연사의 공개토론을 제의한 경우까지 있고 보면 동·서독간에는 「이데오로기」대립속에서도 얼마나 정략적인 대화의 길을 모색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때 동독공산당 중앙위가 제시한 내용은 「독일분열의 극복을 위한 길을 막고 있는 장벽에 돌파구를 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도르트문트」사민당동지들에게 「동·서독일인간의 연설회를 개최하자」는 제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4월 「본」에서는 이러한 동독측의 제안에 대비, 당시 「에르하르트」수상실에서 서독대정당간부들이 모여 제1차 비공개 회합을 갖었었는가 하면 5월에는 연방의회각정당간부들이 수상실에서 모여 제2차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독사민당과 동독공산당 간에는 먼저 7월 14일 동독의 「칼 맑스스타트」(Karl Marx Stadt)에서 합동토론회를 열고 그다음 7월 21일에는 서독의 「하노바」(Hannover)에서 강연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때 동독공산당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취란트」(Neues Deutschland)는 서독사민당의 제2차 회신전문을 게재 보도했다.

66년 12월 서독에 「키징저·브란트」(Kissinger·Brand)의 대연정(大聯政)이 들어서자 「본」은 점차 동독정권을 「사실상 승인」정책으로 기우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브란트」의 「오스트 폴리티크」동방정책이 나래퍼기 시작하자 넓게는 소련·체코·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유고등 동구공산국과의 접촉과 적게는 지금까지 길터놓은 동독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위해 서독내에서의 공산당(DKP)활동까지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60년 중엽부터 서독내에 50년대에 금지해온 공산당의 정치활동까지 허용하게 된 점은 획기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고 이념들의 정치세력이 아직까지 연방의회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방의회에서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독연방정부의 신축자재한 정책운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다시말해서 60년대중턱에 와서 서독내에 새로운 정치활동을 두드러지게 손꼽을 수 있는 점은 첫째 공산당의 허용과 둘째는 이에 맞설수 있는 극우(極右)파세력 즉 신나치스타 할 수 있는 NPD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이 두정당은 모두다 아직 연방의회에까지 대표들을 보내지 못한 실정이라 하지만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속에서 서독의회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세력균형과 중화작용을 할 수 있는 중요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도리 없다.

2. 우편물 및 전신·전화·방송교류

이런 정치정세속에서 동·서독간 인적교류에는 상당한 성과를 견우었다. 앞서 지적한 사실과 같이 1963년 「브란트」서「베르린」시장이 「아부쉬」동독부수상에게 동·서「베르린」왕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뒤에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동·서「베르린」통행증형정이 체결되었다. 뿐만 아니라 71년 9월에는 미·영·불·소등 4대국「베르린」협정가조인이 있었고 같은해 12월에는 두개의 「베르린」협정시행세칙이 성공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서「베르린」시민들은 동「베르린」에 살고 있는 친척과 친지들을 방문할 수 있게됐다.

이전에 더욱더 주목해야 할 사실은 「브란트-셀」(Brand-Sheill) 연정(聯政)이 시작되자 대동구정책에서 결정타를 쳤다고 볼 수 있는 독·소(獨·蘇) 독·파(獨波)불침 조약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70년 8월과 12월에 각각 체결한 이 두조약은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 서기장이 필생사업으로 추진한 「유롭」안보회의의 구미를 돋구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뿐만아니라 서독측으로서는 독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긴장완화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승산을 견우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마침내 독·소, 독·파조약의 비준까지 얻게됐고 또 얼마전에 동·서독간에 국가간조약(國家間條約)까지 맺어 독일민족의 숙원인 상호자유방문이란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데 성공하게됐다.

그러나 이와같은 정치협상의 「무드」가 조성되기까지는 사회적 문화적 접근이 무시할 수 없을만큼 움직이고 있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양독은 무엇보다 대화의 광장을 실질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수단인 통일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뜻에서 양독은 69년 9월 체신성행정담당실무자들이 우편업무 및 TV·라디오의 개선에 관해 협상을 서들기 시작했고 70년 4월에는 양독체신장관

들의 합의에 의해 테렉스 (Telex) 통신시설 확충에 관해서도 합의
의를 보았으며 71년 2월에는 61년 8월 「베르린」장벽이 세워진
이후 끊어졌던 동·서「베르린」간의 전화가 만 10년만에 개통을
보아 한편에 각각 5회선씩 도합 10회선의 통화가 가능하게 됐다.
같은해 4월에는 한편에 각각 10회선씩 도합 20회선으로 증설됐다.

그러나 전화에 있어 동독측은 특히 서독측에 양보하기 시작했다.
즉 71년 9월 동독은 동·서독간 체신관계자회담이 개최된 자리에서
동독측은 서독에 대해 우편관계개선을 위한 조치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보했다.

① (전화의 경우) 71년 12월 31일까지 각방향으로 전화선 30
회선을 증설하고 계속해서 72년 3월 31일까지 16회선을 추가 증
설키로 한다.

② (전보통신의 경우) 71년 12월 31일까지 자동화를 위해 각
방향으로 45회선을 가동키로 한다.

③ (테렉스의 경우) 72년 6월 30일까지 테렉스통신선을 각방
향으로 12회선을 증설하고 주파수(周波數) 이용을 동일화 한다.

④ 74년 12월 31일까지 점차적으로 완전자동전화로 개설키로
한다.

⑤ 73년 12월 31일까지 전화를 위한 표준무선전화 연결과 76
년 12월 31일까지 휴대주파수선을 갖는 새로운 전화시설을 하기로
결정한다.

⑥ 음향·방송선의 중계실을 개선하고 현재의 상당통용선을 바꾸기
로 한다.

⑦ 서신 소포와 수하물(手荷物)의 취급을 반시간을 단축키로
한다.

⑧ 쌍방은 전기의 저항목을 받아드리는데 일치하고 양독산에
색채표준 전파연장시설을 갖추는데 합의 서명키로 한다.

이에 결들여 서「베르린」에 대한 동독측의 요구사항을 보면

① 71년 12월 15일까지 각방향으로 60개 전화선을 연결하고
그것으로서 총 1백 50회선이 가동되기를 원하며 따라서 동독측은
부분적으로 완전자동화시설로 바꿀수 있다.

② 전보통신은 71년 12월 31일까지 자동화한다. 그렇게 함으로
써 각방향으로 12회선이 연결될 수 있다.

③ 71년 12월 31일까지 테렉스통신을 위해 각방향으로 6회선을
추가 가동시키는 동시에 주파수를 동일하게 이용키로 한다.

④ 전화통신은 완전자동화하여 필요한 선이나 연결선은 74년 12
월 31일까지 준비키로 한다.

⑤ 서「베르린」측은 이상의 동독의 제의사항을 양해하며, 동독측은 위의 조치가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할 것을 확인한다. 위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는 본협정이 서명된후 1주일내에 기술자급 협의가 이루어 질것을 확인한다.

⑥ 부 칙

가. 합의된 협정은 서명과 동시에 발효한다.

나. 변경 및 보완은 합의 또는 문서화해야 한다.

다. 유효기간은 쌍방의 일치된 서명과 해약통고로써 끝날 수 있다.

라. 해약통고의 경우 본협정은 통보일자로부터 6개월후에 효력이 상실되고 통고는 서면으로 해야한다.

3. 문화 및 학술교류

전후 57년까지만해도 양독간에는 학술문화분야의 교류가 있었으나 61년 「베르린」장벽이 쌓올려진 이후로는 거의 단절된 상태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서먹한 분위기속에서도 유명한 「오케스트라」와 연극등의 상호방문이 있었다는 사실에는 놀라지 않을수 없다.

즉 62년 동독에서 거행된 「괴테」인스티튜트총회와 「바하」축제, 「헨델」축제등에는 서독문화예술인들이 소수나마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가하면 63년에는 그나마 동독측의 여행허가제한완화로 문화적 접촉이 비교적 활발히 되어서 「드레즈데너」(Dresdener) 관현악단의 서독방문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밖에 음악, 연극 및 「발레」의 경우만 보더라도 64년에 동독 「작센」(Sachsen)의 국립「드레스덴」관현악단의 서독방문이 가능했을 뿐아니라 이어 「라이프찌히」(Leipzig)의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Gewandhaus Orchester)의 서독방문이 가능했고 동「베르린」의 독일극단(Das Deutsche Theater Ostberlin)이 서독을 방문해서 그곳의 여러도시에서 공연이 가능했다고 전해지며 다른한편으로는 서독의 연예단 「힐테하임」과 「막테부르크」극단이 「오닐」의 「밀집」과 「파웬코츠」의 「80일간의 세계일주」가 동독에서의 공연이 가능했다. 그리고 「에센」(Essen)의 「폴크뱅」 「발레」단의 동독공연도 가능했다 한다.

학술교류의 경우만하더라도 「바이마르」의 「괴테인스티튜트」총회와 「프라이브르크」의 산림인(山林人)회의 그리고 「바이마르」에서의 독일자연과학자 의사협회 제1백3차총회가 동·서독관계자들의 참석으로 개최된 일이 있다.

64년 4월 동독의 문화성장관 「한스 벤투진」(Hans Bentzin)은 서독각주의 문교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서독각주의 문교장관 대리와 동독문화성대리간의 「문화협상」을 계의한 일까지 있는가 하면 이와함께 상설기구로서의 양독간문화학술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 일까지 있다.

서독은 물론 전문적인 학술문화용건으로 인한 동독여행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않는것이 관례로 되고 있다.

동독측은 57년 이래 서독과의 대화를 나누어 오고있으면서도 많은 제한을 하여 왔다고하나 이에 대해 서독측에서는 특별제한조치가 필요없이 오히려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접촉을 권장해 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64년과 65년 두차례에 걸쳐 양독간에는 「베르린」공과대학촌에서 동화계「세미나」가 개최되고 국제「펜클럽」의 개최지에 관해서도 협의한 일이있었다고 한다.

「한스」역사학회와 동독「할레」(Halle)에 거의 독일아카데미년차총회에 서독·학자들이 참가 발표한일등 동·서독간 학술교류도 분별 대열속에서 끊임없이 유지돼 왔었다.

4. 상호신문 및 출판물교류

오늘날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발간되는 신문,잡지를 통해 동독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게 돼있고 라디오·TV시청에도 아무런 제한없이 볼 수 있게 돼 있다. 이미 양독간에 전파매디아에 관해서는 그 개선점을 논의 합의한바 있드시 서독에서는 동독에서 쓰는 방송의 시청은 물론 신문,잡지의 자유로운 구독까지 제한조치하지 않고 있다.

68년 서독연방의회는 처음으로 신문의 내용이 서독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지 않을때는 서독영토밖에서 발간되는 신문의 수입과 배부를 금지하지 못한다는 결의를 입법으로 채택한바있고 69년 3월에는 그 유효기간을 71년 3월 10일까지 연장 조치한일까지 있다.

71년 3월 서독연방의회는 유효한 예외규정을 그만삼일치로 무제한 허가하도록 결의했다. 이로써 원선적인 조직의 선전자료나 배포가 죄가되는 벌칙규정 제86조1항도 아울러 무제한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렇듯 서독은 동독일간지의 자유로운 수입이 실시된이래 69년 중반기까지는 약 10%의 구독증가율을 보이더니 그후에는 계속 3%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동독에 있는 구독총본부가 서「베르린」과 서독의 대리점을 통해

서 판매부수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니 모두가 허사로 돌아가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한다.

여기서 잠깐 71년도 동독일간물이 서독으로 들어온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66종의 동독신문이 서독으로 유입됐고, 둘째 주간 및 일간간행물이 매월 2천2백부며, 셋째 매일 2천8백부의 정기일간지가 서독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중에는 동독공산당기관지 「노이에스 도이취란트」가 자그만치 1천6백50부나 포함되어 있어 이시 단일일간지로서의 최고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서적전업에 있어서도 69년 11월 서「베르린」의 「유럽·센터」에서는 대규모의 동·서독출판물전시회가 열렸으며 서독출판사에서 서독의 「라이프찌히」 서적박람회에 도 매년 빠짐없이 출품하고 있다 하고 70년에는 예년에 비해 비교적 좋은 성과를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다.

제Ⅳ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60년대에 진행된 냉전체제(冷戰体制) 해소의 조류는 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냉전의 세계를 특색있게 표현했던 동서(東西)의 이데올로기적(的) 경계선(境界線)은 점차로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것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월남(越南) 등 이른바 분단국가(分斷國家)가 있는 지역뿐이라 할수 있다. 그것도 점차적으로 동서 양대진영간의 포괄적인 대결(對決)의 초점이라는 성격은 상실되고 국지화(局地化)되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 분단국가들은 모두가 국가의 재통일(再統一)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안고있다. 때문에 민족내부의 이데올로기적분열과 이에 수반한 정치 사회체제의 대립은 당연히 각기의 정권과 지역의 기본적 이해(利害)에 직접 결부된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정치적 다극화(多極化)현상의 진행에 따라 공존체제(共存体制)를 굳혀왔으며 동시에 국가간의 관계는 탈(脫)이데올로기화(化)의 경향을 지향해 왔다. 「닉슨」미국대통령이 모든나라와 교류하며 접촉할 정책을 채택한다」고 말한 「브커레스트」연설과 「대결(對決)에서 교섭으로」라는 그의 대외(對外)자세는 과거의 냉전대결을 크게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70년대의 세계외교가 탈(脫)이데올로기 화를 계속 지향할 것이라는 예고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분단국가에서도 독일의 경우는 「브란트」의 사민당(社民黨)정권이 현실주의를 기초로 점차 다른 이데올로기체제를 갖는 2개의 독일의 공존(共存)을 굳혀가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는 미·소관계 및 동서간의 긴장완화의 정착화(定着化)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환경변화를 필요로한 것이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에서의 「2개의 독일」이라는 정착화 경향은 아시아 지역의 분단국가들에게도 크나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다극화(多極化)해 가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북괴와 월맹(越盟)을 제외한 모든나라와 교류할 방침을 모색하고 있으며, 판문점(板門店)에서는 민간레벨이긴 하지만 남북적십자사 이산(離散)가족찾기 회담을 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정세의 급선회에 따라 한국언론의 보도경향과 태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71년 8월 12일의 남북적십자사의 이산(離散)가족찾기 회담 개최선언에 따른 회담진행과

정의 보도와 북한문제보도 경향이다. 이어 12월 6일 선포된 박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國家非常事態) 선언에 뒤따른 북괴의 군사도발양상의 확대보도이다. 72년에 접어들면서 부터는 미국 「닉슨」 대통령의 잇따른 대(對)중국 및 대 소련접근자세에 수반하는 공산권문제의 보도경향이 클로스업 되었다. 이 시기를 한국 언론사상 금기(禁忌)되었던 북한문제보도와 대(對)공산권문제보도의 해빙기라고 규정할 수 있다. 사실상 60년대에 계속되어온 냉전체제(冷戰體制)속에서의 공산권문제 보도는 거의 타부시(視)되어 왔거나 아니면 비난 일변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러나 국제 정치 추세가 「협상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또 관문점에서는 남북적십자사 대표들이 가족찾기회담을 진행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속에서 우리 언론계는 과거와 같은 공산권보도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언론의 사명과 그 기능은 국가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제약 내지 통제를 받게된다. 이데올로기 전쟁이 극심했던 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쳐 집행했던 언론규제(規制)관계법의 조정(調整)문제는 여기에 당선히 제기되는 것이다. 분단국가라는 한국적인 특수한 사정아래 국가안보(安保)와 언론과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언론계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지상과제는 급선회하는 국내외 정세에 합리적이고 조화(調和)를 이룰수 있는 관계법의 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진실로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공산권문제 보도가 가능해질 것이며 합법적인 보도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언론규제관계법의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의 집행에 있어 악의(惡意)적인 확대해석이나 원천적인 법(法)정신을 여기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개념이라든지 국가이익의 한계등을 가림에 있어 어디까지나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자의로운 해석은 금물이라할 것이다.

국가안보와 언론보도의 한계라는 점에서 볼때 우리에게 참고가 되는 것은 71년 5월 이른바 미국방성기밀보고서의 폭로사건을 들 수 있다. 당시 「뉴욕·타임즈」지와 「워싱턴·포스트」지는 미행정부가 추구해온 지난 10여년동안의 월남전의 내막을 서슴없이 폭로하여 미연방정부의 막강연 「오유된 권력」집행에 도전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총국적으로 미대심원의 언론보도의 자유가 「국가안보」에 우선한다는 판정을 내림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 전통적인 보도자유(天賦權)의 명확히 보장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안보」의 규정과 정의를 놓고 객관적인 판단의 차이가 NYT, WP의 보도자유를 인정한, 승소하게 된것일뿐 진정한 의미의 보도자유를 미대심원이 보장해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경우 국가안보는 개념이 문제가 된다. 국가안보는 일반적 개념으로 「국가이익」을 지키는 체제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국가이익」개념의 설정에서부터 국민적 총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민주언론보도는 이번에 국민총화의 차원에 입각한 「국가이익」을 지키는데 보도의 무한한 자유가 보장된다고 봐야할 것이다.

결국 한국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생활에서의 「국가이익」개념의 정의가 바로 보도의 한계를 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된다.

더우기 최근 총력안보체제로 다듬어진 한국의 정치현상에서 볼때 민주언론보도의 진로와 방향 그리고 한계점을 타율적 요인과 자율적 요인의 복합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이 과연 총력안보체제의 강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할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민주언론보도의 강점은 「국가이익」을 지키는데 있으며 적어도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실제적 체제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체제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것이 「국가이익」이라는 점을 전제한데서 민주언론보도의 강점이 찾아지는 것이다.

최근 북괴를 방문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인 NYT의 「솔즈버리」와 「존·M·리」기자의 보도에 언급 5월 31일자 NYT사설은 이점에 대해서 적절한 표현을 가하고 있다.

「전체주의 국가와 공개적 토론과정을 갖는 국가간의 접촉은 될 연코 독재체제에 유의하기 마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부당한 패배주의다」고 지적했다.

말하자면 NYT의 사설논평은 적어도 한국 언론보도의 「자율성」에 의미심장한 문제점을 제시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국적인 정치실제를 전제한 적극적인 보도자세는 총력안보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길이 된다는 것이며 이의 역(逆)은 오히려 안보체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임을 말해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민주언론보도의 강점은 바로 체계적 다양성을 「국민적총화」로 묶어 표현하는데 있다. 총력안보체제가 요구하고 있는 획일적인 「국민총화」수립과정은 결코 안보체제의 외형적 단일·단결을 표현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내용의 빈곤을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보도는 체제에 대한 긍정적자세를 전제로 해야

한다. 여기에서 민주체계의 다양성과 그것의 「국민총화」에로의 형성과정의 민주적 정치에 의한 것이어야 함이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각장(各章)으로 나누어 논의(論議)해 본 한국에 있어서의 안보와 언론의 관계 및 북한과 공산권문제를 보도하는 기본방향문제를 총정리하여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제 2 절 정책건의(政策建議)

① 반공법(反共法) 제 4 조중 반국가(反國家)단체의 찬양 고무 동조등 사항은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막연한 정의(定義)에 치우칠 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회담 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질 때 법에 저촉안 되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을 대담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북한문제를 다루는 전문기자의 양성은 신문사 자체가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 및 공산권자료가 풍부한 정부관계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③ 북괴 및 공산권에 관계되는 일반기사 및 해설기사 사설등의 보도한계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④ 남북적십자사 이산(離散)가족찾기 회담 담당기자들의 취재행위는 현행 반공법, 국가보안법등에 저촉된다는 일반론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의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概念)과 저촉한계등은 어디까지나 헌법 및 관계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결정짓도록 해야하며 절대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⑥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기사의 한계성을 결정짓는 일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며 또한 언론계 단독으로 결정지어도 안된다.

⑦ ⑥항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와 언론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에서 국가이익과 보도의 한계등을 결정해야 한다.

⑧ 정부와 언론계와의 협의체에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의 유권적인 해석을 사법부(司法府)에 의뢰한다.

⑨ 북한 및 공산권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언론기관의 특수기능을 갖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북괴방송(放送)을 들을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야한다.

한다. 여기에서 민주체계의 다양성과 그것의 「국민총화」에로의 형성과정의 민주적 정치에 의한 것이어야 함이 거듭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금까지 각장(各章)으로 나누어 논의(論議)해 본 한국에 있어서의 안보와 언론의 관계 및 북한과 공산권문제를 보도하는 기본방향문제를 총정리하여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제 2 절 정책건의(政策建議)

① 반공법(反共法) 제 4 조 중 반국가(反國家)단체의 찬양 고무 동조등 사항은 자의적인 확대해석이 가능하며 막연한 정의(定義)에 치우칠수 있으므로 이 조항의 조정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회담 상호방문등이 이루어질때 법에 저촉안 되도록 시대에 뒤떨어진 법조항을 대담히 폐지 또는 개정해야 한다.

② 북한문제를 다루는 전문기자의 양성은 신문사 자체가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북한 및 공산권 자료가 풍부한 정부관계기관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③ 북괴 및 공산권에 관계되는 일반기사 및 해설기사 사설등의 보도한계는 대폭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④ 남북적십자사 이산(離散)가족찾기 회담 담당기자들의 취재행위는 현행 반공법, 국가보안법등에 저촉된다는 일반론적 해석이 가능하므로 이의 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개념(概念)과 저촉한계등은 어디까지나 헌법 및 관계법률의 테두리안에서 결정짓도록 해야하며 절대로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⑥ 국가안보에 저촉되는 기사의 한계성을 결정짓는 일은 정부가 단독으로 해서는 안되며 또한 언론계 단독으로 결정지어도 안된다.

⑦ ⑥항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이룩하기 위하여 정부와 언론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에서 국가이익과 보도의 한계등을 결정해야 한다.

⑧ 정부와 언론계와의 협의체에서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때에는 그의 유권적인 해석을 사법부(司法府)에 의뢰한다.

⑨ 북한 및 공산권 정보의 신속한 수집을 위해 언론기관의 특수기능을 갖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북괴방송(放送)을 들을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해야한다.

⑩ 정부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백·그라운드·브리핑」을 더 조직적이고 광범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할 것이 아니라 상설적(常設的)으로 제도화 해야 한다.

⑪ 정부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북한 및 공산권에 관한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또 언론기관이 독자적으로 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허가를 해야 한다.